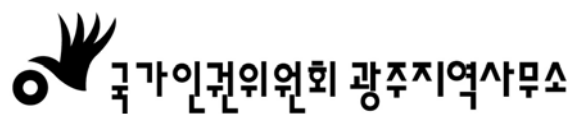


활동가 토론회 - 다섯번째

지역 내 아동인권 실태보고와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일시 : 2007년 3월 30일(금) 15:00~17:00

장소 : 광주은행 본점 20층



■ 진행순서

구 분	내 용
· 접수 및 취지 설명	
· 사 회 : 신기숙(호남해바라기아동센터 소장)	
· 발 제 1 (15:10~15:30)	아동권 보장을 위한 국제적 기준과 국내이행과제 : 조형석(국가인권위원회인권정책본부국제인권팀)
· 발 제 2 (15:30~15:50)	아동권 관련 국내 법령 · 정책현황과 과제분석 : 이용교(광주대학교사회복지학과 교수)
· 질의 및 응답(15:50~16:00)	
· 지정토론 1 (16:00~16:15)	저소득층아동 인권실태와 추진과제 : 유길원(광주광역시가정위탁지원센터 소장)
· 지정토론 2 (16:15~16:30)	시설생활아동 인권실태와 추진과제 : 김철훈(목포우리집 원장)
· 지정토론 3 (16:30~16:45)	학대피해아동 인권실태와 추진과제 : 김은영(광주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소장)
· 지정토론 4 (16:45~17:00)	아동권 보장을 위한 지역사회 보호망에 관한 제안 : 소동하(전남아동보호전문기관 소장)
· 자 유 토 론 및 정 리(17:00~17:30)	

아동권보장을 위한 국제적 기준과 국내이행과제 점검

조 형 석(국가인권위원회 사무관)

I. 개 관

- 우리나라는 1989년 UN총회에서 채택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이하 ‘아동권리협약’이라 약함)을 1991년 비준함으로써 협약 당사국이 되었으며, 2006년 2월 현재 192개국이 당사국으로 되어 있음
- 2002년 5월 유엔총회에서 「아동권리협약」의 2개의 선택의정서 채택하였음. 2개의 선택의정서는 아동의 무력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와 아동매매·매춘·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선택의정서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임

II. 아동권리협약

- 아동권리협약 채택 및 발효
 - '89.11.20 : 유엔총회 「아동권리협약」 채택
 - '90. 9. 2 : 「아동권리협약」 발효
 - '90. 9.25 : 한국 비준 ※ 미국, 소말리아를 제외한 전 세계 192개국 비준 (06년 현재)

□ 아동권리협약의 주요내용

○ 4개의 기본원칙 : 무차별의 원칙(제2조),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제3조), 생존·보호·발달의 원칙(제6조), 참여의 원칙(제12조)

○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보장하는데 환경적 조건에 관계없이 아동의 생존권이 존중되고 그들의 잠재력이 최대한으로 발현 되도록 지원·지지

- 시민적 권리의 보호 : 생명권, 국적권, 신분보존권, 의사 표시권 등
-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권리의 보호 : 가족과의 동거권, 양육 받을 권리, 입양, 건강 및 의료지원, 사회보장, 교육권, 결손가정과 장애 아동의 보호, 문화활동 참여권 등
- 기타 권리의 보호 : 학대, 유기, 착취, 인신매매, 무력, 분쟁, 마약, 약물 등으로부터의 보호

○ 위에서 언급한 4개의 기본원칙과 각 권리영역에서의 보호는 결론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¹⁾에게 성별, 종교, 신분, 인종, 국적에 상관없이 차별을 해서는 안되며²⁾, 아동의 모든 활동에 있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임³⁾

□ 당사국의 의무

- 협약상 권리실현 조치 : 입법, 행정, 사법 기타 조치 등
- 국가적 가용자원의 최대한도 내에서 조치를 취할 의무
- 협약내용과 관련된 국내 이행상황에 관해 협약 발효 후 2년 내에 제1차 보고서를 제출하고 그 이후에는 매 5년마다 국가보고서 제출
 - 제1차 보고서 : '94년 제출, '96년 심의
 - 제2차 보고서 : '00년 제출, '03. 1. 15 심의
 - 제3차 보고서 : '08년 제출 예정

1) 제1조: 이 협약의 목적상, 아동은 아동에게 적용되는 법에 의하여 보다 조기에 성인연령에 달하지 아니하는 한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2) 제2조: 1.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내에서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법정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함이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이 그의 부모나 법정 후견인 또는 가족 구성원의 신분, 활동, 표명된 의견 또는 신분을 이유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처벌로부터 보호되도록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제3조 제1항: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 기관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III 제2차 정부보고서를 중심으로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여부 판단

○ 아동권리위원회는 2003년에 우리나라의 제2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Concluding Observation)를 밝혔으며, 동 최종견해에는 주요문제영역 및 권고사항을 10개의 장으로 나누어 의견을 표명하고 있음.

○ 현재 제3차 정부 보고서는 2008년 12월에 제출예정이므로 제3차 정부보고서의 준비보다는 제2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를 중심으로 동 권리협약과 국내법과의 정합성 문제와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상설중앙기구의 설립 그리고 우리가 유보한 조항에 대한 철회가 먼저 이루어져야 함.

○ 아동권리협약과 국내법과의 정합성 문제

제2차 최종견해와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국내법을 개정할 경우, 아동권의 실질적 확보를 위한 아동복지법의 개정, 아동권 보장을 위한 민법의 개정, 초중등교육법의 개정, 외국인 노동자 자녀 차별금지 관련 법제도 개선, 아동 연령정의에 대한 통일성 수립 등이 필요함.

1. 유보조항의 철회

○ 우리가 유보한 조항은 제9조 3항(부모의 별거나 이혼 시에 아동이 부모를 방문하고 관계를 유지할 권리), 제21조(a)(입양의 허가제), 제40조 2항(b)(5)(상소권의 보장)이다.

○ 자녀의 부모면접권보장

제9조 3항의 자녀의 부모면접권보장에 대한 유보의 철회에 대해서는 민법의 개정 조항으로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했으나, 이후 수차례 있었던 민법 개정의 내용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

○ 입양의 허가제

제21조(a)의 입양 허가와 관련해서는 본 조항에 완전히 부합하도록 2005년 5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률개정을 권고하였다. 인권위원회는 본 권고에서 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입양관련제도를 아동의 이익 최우선원칙, 아동의 의사 존중원칙, 아동의 정체성에 대한 권리 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입양관련 민법을 신속히 개선하여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입양과 관련된 법률은 민법 제4편 제4장 부모와 자, 제2절 양자(제866조 내지 제908조) 및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하 ‘입양특례법’이라 함)이다. 이러한 법령에 따라, 국내에서 아동의 입양은 민법상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입양(부모의 동의, 15세 미만자는 법정대리인의 승낙)과 입양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입양으로 나누어지는데, 부모의 동의에 의한 경우에는 호적법에 따른 신고만으로 입양이 성립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878조 및 제871조, 제869조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야 하고, 입양특례법에 의한 입양기관의 경우 역시 개정하여 사법적 심사 후에 입양이 허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해외입양아동의 보호에 관해서는 해외입양아동을 보호하기 헤이그 협약에 규정된 구체적인 절차에 따라 우리의 관련 입양관계법을 적절히 정비하여야 한다.

○ 상소권의 보장

이 조항에 대해 유보한 이유는 헌법 제110조 4항 및 군사법원법 제534조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에서는 사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심제로 할 수 있으므로 본 협정과 위배되기 때문이다. 이에 관해서는 이번 헌법 개정시 단서조항으로 아동에 관한 규정을 삽입하여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2. 관련 국내법의 개정

○ 차별금지에 관한 입법 및 이주자 자녀를 위한 관련법 제정

아직까지 아동과 관련하여 차별금지를 규정한 법률이 없으며, 이주자 자녀의 교육받을 권리는 2003년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의해 중등교육까지 보장되었으나 실제로 취학율은 낮은 상태이다. 특히, 불법 노동자의 자녀의 경우 입학이 학교장의 재량에 달려 있어 입학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책과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

○ 아동의 견해 존중

우리 민법 제909조 1항의 “미성년자인 자는 부모의 친권에 복종”해야 한다

라는 규정을 삭제하고, 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자녀의 최선의 이익이 보장되어야 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하며, 또한 입양 시 아동의 의사표명권을 15세 미만으로 대폭 낮추고 아동의 발달 단계에 맞게 의사 표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아동의 법적 증언의 경우, 특히 문제되는 영역은 아동의 성폭력 사건의 경우이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전문(傳聞)증거와 그 증거능력의 제한(형사소송법 제310조의 2 및 동법 제312조)규정을 두어 아동의 직접적인 증언 없이는 수사를 개시하기조차 힘들며 한다고 하더라도 아동에 대한 배려 없는 수사와 아동이 당한 정신적 고통을 법정에서까지 다시 반복하여야 함으로 이는 옳지 않다. 따라서 아동의 경우에는 이러한 증거능력에 관한 특별 조항을 두어 아동의 법정증언에 대한 아동심리학적인 배려가 필요할 것이다.

○ 아동의 연령 기준에 대한 제고

미성년자, 아동, 청소년, 소년, 연소자 등 다양한 낱말의 연령기준에 합리성이 부족하고, 같은 명칭이라도 법률에 따라서 그 기준이 다르므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이라 함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복지법과 청소년기본법을 교차시켜 보면, 18세 미만은 아동복지법상 ‘아동’이고, 9세 이상 24세 미만은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이므로 ‘9세 이상 18세 미만’은 ‘아동이면서 동시에 청소년’이 된다. 또한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아동, 청소년, 미성년자 등에 대한 용어를 보다 명쾌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남녀 초혼 연령 차이에 대한 동일적용이 필요하며, 특히 참정권의 경우 세계 대부분 나라가 참정권의 하한선을 18세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만18세는 대체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생이 되거나 직장인 되는 첫 시기이고, 국방의무, 납세의무 등을 지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18세 낮추어 참정권을 부여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2004년 2월 17일 국회에 전달한 의견서에서, “선거권 부여는 독자적으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적 판단능력의 여부이므로 민법상의 성년 나이(20살)와 일치시킬 필요가 없으며, 1960년에 정해진 현행 선거 나이가 우

리사회의 40여 년간 변화와 발전을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선거 나이를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아동권리협약 역시 18살 이상을 성인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미국·독일·영국 등 100여개 나라에서 18살부터 선거권을 주고 있으며, 18살부터 병역의무와 공무원 자격을 주는 국내 다른 법과도 형평이 맞지 않는다.

○ 학교에서의 체벌

동 협약 제22조는 모든 형태의 체벌을 금지하고 있으나 초·등교육법 제18조와 시행령 제31조 7항4)에 따르면 학교장은 교육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학생에 대한 체벌을 허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체벌을 허용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 지침을 내린 바 없으며 각급 학교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 체벌의 이용은 교칙에 따른 것이며, 교칙은 교사, 학부모, 학생의 참여와 의견을 반영하여 만들어진다. 체벌에 관련된 교칙은 학교마다 다르다. 일부 교칙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체벌이 허용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칙을 담고 있고 일부 교칙은 체벌을 전면 금지하며, 일부교칙은 체벌에 관한 어떤 규정도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법 규정의 개정이 요구된다.

3. 상설중앙기구의 설립

○ 현황 및 문제점

제2차 최종견해에 의하면, 아동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한 조정 권한을 행사하고 책임을 갖는 상설중앙기구의 설립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실을 살펴보면, 아동인권 실태 및 정부의 아동정책과 프로그램을 지속적·체계적으로 모니터링 상설중앙기구가 부재하고, 여러 부처에서 분산되어 수행하고 있는 아동인권정책에 대한 종합적 자료수집이나 평가가 어려우며, 협약이행 조정 및 모니터링 활동이 미흡하므로 이를 위한 별도의 기구설치가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가 이와 유사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기능과 위상에 있어 실효성 여부가 문제 된다.

4) 초·중등교육법 18조 (학생의 징계) ①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을 퇴학시킬 수 없다. ②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31조 (학생의 징계 등) 7항: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하는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 상설중앙기구의 지위

제2차 최종견해는 아동권조정기구, 공공기관에 의한 모니터링, 독립적인 모니터링으로 나누어 권고 하고 있다. 그리고 아동조정기구는 아동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에 대해 완전한 조정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에 의한 모니터링은 정부 내 상설기구로서 설립되는 것에 대해서 환영하고 있으며, 독립적인 모니터링에 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을 중요시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개인적으로 아동조정기구에 아동에 대한 정책 조정권이 인정되어야 하며, 동시에 공공기관에 의한 모니터링 역시 동시에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상설중앙기구는 아동정책조정권이 부여되어 있으며, 동시에 모니터링의 역할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정부 내 기구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현재의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확대하거나 새로운 법안에 근거하여 이에 해당하는 상설기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4.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 제2차 최종견해의 입장

아동권리위원회는 독립적인 모니터링에 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하며, 현 우리 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으로는 전문성의 부재를 들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로 인권위원 중 1인은 아동전문가로 임명하며, 아동권리에 대한 소위원회의 설립 그리고 아동의 접근성 보장을 들고 있다.

○ 국가인권기구의 역할

아동권리위원회는 일반논평 제2호에서 국가인권기구는 헌법적으로 확립되어야 하며, 아동을 직접적 혹은 대리하여 제출한 진정과 청원을 포함하여, 조사에 착수할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중재 및 조정, 권고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또한 권고할 수 있는 행위로 다양한 예5)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부보고서

-
- 5) (a) 진정 혹은 그들 스스로의 동기에 의해, 그들의 위임범위 내에서 아동권리의 침해의 모든 상황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는 것
(b) 아동권리에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행위를 요구하는 것
(c) 국가 당국의 요청 혹은 그들 스스로의 동기에 의해 아동 권리의 보호와 증진에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하여 의견, 권고와 보고서를 준비하고 공표하는 것
(d) 아동권리의 보호와 증진에 관련된 법과 관행의 적절성과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것
(e) 동 협약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 공적, 사적 기구와의 조언을 포함하여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감독 등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5. 아동에 대한 상업적 성착취

최근 청소년보호법의 대폭적인 개정으로 인하여 동 협약에 대한 이행이 한층 높아졌다. 예를 들어,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유형을 추가하고 청소년 대상 강간 등의 고소기간 연장, 성범죄를 범한 청소년에 대한 처리조항 신설하였으며, 또한 2005년 개정을 통해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만을 성을 사는 행위로 국한하였던 것을 청소년의 신체접촉 및 자위행위로까지 그 범위를 확장했다는 점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개정된 법에도 성을 사는 행위의 정의를 대가성이 있는 성적행동만을 전제하고 있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대가성 없는 성적행동은 처벌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제기되고 있다.

-
- 동 협약의 선택 의정서 및 아동의 권리에 관련된 기타 국제적 인권 문서와 국가 입법, 규제, 관행의 조화를 증진시키고, 동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증진시키는 것
- (f) 국가 경제정책 입안자들이 국가 경제 및 발전 계획에 있어서 아동의 권리를 고려하고, 평가하도록 보장하는 것
 - (g)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는데 필수적인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수집된 기초에 근거한 다 른 정보와 적절하게 구분된 통계수치를 보장하기 위해 아동권리의 상태를 감독하고 정부의 이행에 관하여 보고하고 검토하는 것
 - (h) 여하한 관련 국제 인권 문서의 비준이나 수락을 독려하는 것
 - (i)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아동에 관한 모든 행동에서의 최우선의 고려요소가 되도록 요구하고 있는 동 협약 제 3조에 따라 아동에 관한 법률과 정책의 영향이 발전에서부터 이행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 이상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보장하는 것
 - (j) 제12조의 측면에서, 아동의 권리와 관련된 문제를 정의하고, 아동의 인권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아동의 견해가 표현되고 경청될 것을 보장하는 것
 - (k)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주제에 관한 국내적 입법과 국제적 문서의 발달에 있어서 아동 자신들이 참여 하는 조직을 포함하여, 아동권리 NGO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고취하고, 실현시키는 것
 - (l) 아동권리의 중요성에 대한 공공의 이해와 인식을 증진시키는 것,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위해 언론 매 체와 긴밀히 협조하고 이 분야에서의 연구 및 교육적 활동에 참여하고 후원하는 것
 - (m) 당사국에게 "적절하고 적극적인 수단을 통해 아동과 성인에게 동 협약의 원칙과 규정이 널리 알려지도록 할 것"을 의무지우고 있는 동 협약 제42조에 따라 정부, 공공기관 및 일반 대중에게 동 협약의 규정과 국가가 이러한 관점에서 그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감독 방법에 민감해지도록 할 것
 - (n) 학교와 대학의 교육과정과, 전문계 내에서 아동 권리의 완성과 이에 대한 연구 및 교수 프로그램의 형 성에 노력할 것
 - (o) 아동에 특히 초점을 맞춘 인권교육에 착수할 것(덧붙여서 아동 권리의 중요성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이해 증진도 포함)
 - (p) 국가 내에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아동에게 법적 조력을 제공할 법적 절차를 마련할 것
 - (q) 법원에 소를 제기하기 전에 필요하다면 중재나 조정 절차를 마련할 것
 - (r) 소송참가자 혹은 고문으로서 관련 사건에서 법원에서 아동권리 전문가를 제공할 것
 - (s) 당사국이 "적절한 감독뿐만 아니라 그들의 직원의 수와 적합성, 특히 안전, 건강에 있어서 아동의 보호 혹은 보살핌에 책임을 지는 기구, 업무, 시설이 관련 당국에 의해 설정된 기준에 부합할 것을 보장하도 록" 의무지우고 있는 동 협약 제3조에 따라 소년원(그리고 아동이 갱생이나 처벌을 이유로 구금되어 있 는 모든 장소)에 대한 방문 및 상황에 대한 보고를 하고 증진을 위한 권고를 하는 기관에 대한 고려를 시행할 것
 - (t) 상기에 부수적인 기타 행위들을 수행할 것

IV. 결 론

최종견해에서 언급된 내용과 일반논평에 밝힌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에 대하여 충분히 논의하고 앞으로도 적극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첫째,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아동권리전문가와 정부, 학회, NGO와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현실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책 및 법제도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둘째, 국가인권위원회는 권고기관이며 또한 이를 위한 조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 이용하여 어린이 보호시설 및 인권 침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하고, 셋째, 아동권리협약상의 일반원칙에 부합되도록 관련 법령 개선 권고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참고 1> 아동권리협약 제2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구분	우 려 사 항	권 고 사 항
협약 제 44조에 따라 당사국이 제출한 정부 보고서에 대한 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	<p>[일반조치] 유보(제9조 제3항의 아동의 부모 면접권보장, 제21조 (a)호의 입양에 대한 관계당국 허가, 제40조 제2항(b)(v) 상소권 보장) 국내법과 협약의 불일치, 아동관련 정책과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기구의 부재, 국가인권위원회에 아동 전담 부서의 부재, 보건 및 교육분야의 예산 감소, 18세 미만 아동에 대한 정보 수집 미흡, 시민사회와의 협력 미흡, 대중 및 전문가의 동협약에 대한 인식 미흡</p> <p>[아동의 정의] 최소 혼인 가능 연령의 남녀 차이</p> <p>[협약의 일반원칙] 협약의 일반 원칙이 법령·정책 및 프로그램에 완전히 반영되지 않음, 인종차별에 대한 정보부재 및 헌법에 인종차별이 명시되지 않음. 아동에 대한 전통적 태도가 아동의 입장 존중을 제한</p> <p>[시민적 권리 및 자유] 표현과 결사의 자유 제한, 학교에서 차별의 공식적 허용</p> <p>[가족환경 및 대안적 보호] 그룹홈, 수양 보호가 제한적이고, 사적 보호 기관이 정부의 법령 및 감사에서 제외됨. 높은 국제적 입양. 아동입양에 관한 협약에 비준하지 않음. 아동 학대에 대한 진정 및 피해자에 대한 조력을 제공할 전국적 제도 미비.</p>	<p>[일반조치] 유보철회. 국내입법이 협약의 원칙과 내용에 일치하도록 개정, 아동관련 정책과 프로그램을 총괄 조정하는 기구 지정, 협약 이행 감시 기구의 설립,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중 아동권리 전문가를 두거나 아동권리 소위원회 설립, 아동에 대한 접근성 확보, 아동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이행위한 예산의 우선 배정, 정보 수집 위한 효과적인 시스템 개발, 협약이행 및 정책결정에 있어 시민단체와의 협력</p> <p>[아동의 정의] 평등한 혼인 연령</p> <p>[협약의 일반원칙] 협약의 일반원칙을 아동관련 법령, 정책적·사법적·행정적 결정 및 정책 계획에 반영, 협약 제2조에 규정된 모든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입법, 대중교육과 캠페인을 통하여 한부모 자녀·혼외자녀·장애아동·이주노동자 자녀·여아 등에 대한 사회적 차별 철폐, 2001 인종차별에 관한 세계회의에서 채택된 선언및행동강령 이행에 관한 정보제공. 아동복지법에 아동의 견해를 표현할 권리를 포함. 부모, 교육자, 공무원 등에 아동의 견해를 표현할 권리에 대한 교육 정보 제공</p> <p>[시민적 권리 및 자유] 아동의 학교 내외에서 결정과정 및 정치적 활동에 참여하도록 법령 및 학칙 개정.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 금지 권고 이행. 대중 교육 캠페인</p> <p>[가족환경 및 대안적 보호] 재정적 지원을 통한 그룹홈과 위탁 보호제도 확대. 공·사 아동 보호기관에 대한 정기적 감찰. 사회복지사 양적 질적 증가. 국내외 입양제도에 대한 검토, 아동입양에 관한 협약 비준. 아동학대와 유기에 관한 진정 접수·감시·조사제도 수립, 아동 학대</p>

<p>이혼의 증가 및 아동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p> <p>[보건 및 복지] 보건 예산 과소. 장애아동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유기</p> <p>[교육] 초등교육만이 무상, 고등 교육 참여가 남성보다 여성이 현저히 적음, 과도하게 경쟁적인 교육제도</p> <p>[특별한 보호조치] 청소년성보호법이 효과적으로 이행되지 못함.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 소년범이 형사절차와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하고, 자유를 박탈당할 우려. 불법 체류 노동자 자녀를 포함한 이주 노동자 자녀에 대한 복지 및 권리 규정 부재</p> <p>[선택의정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에 대해 비준하지 않음</p>	<p>문제에 대한 정책 및 프로그램 수립위한 행위자 및 피해자에 대한 정보 수집. 양육비 지급 강제 대책 수립</p> <p>[건강 및 복지] 보건예산증대, 모유양육권장 및 교육, 그러한 여성에 대한 고용상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책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 문화 철폐, 장애아동의 교육 요구에 대한 포괄적 조사, 장애아동의 공공 시설 접근권 보장</p> <p>[교육] 공교육의 질적 향상, 취학전 과정 및 중등교육의 비용 감소 및 무상화, 능력에 근거한 고등교육 접근성 보장, 협약 29조 1항의 교육 목표 및 경쟁 감소를 위한 교육 정책 재검토</p> <p>[특별한 보호조치] 아동 상업적 성착취에 관한 국가계획 개발, 법집행 공무원·사회복지사·검찰관에 대한 교육, 성착취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 예방조치. 협약의 소년범 관련 규정이행, 형사절차·보호처분 결정에 대한 검사의 재량권 배제. 불법 체류자를 포함한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동등한 공적 서비스 접근권 보장위한 국내법 개정, 이주노동자 협약 비준</p> <p>[선택의정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에 비준</p> <p>[협약의 홍보] 협약 보고서 및 관련 문서를 국가 관련 기관 및 시민단체 등에 배포</p>
--	---

<참고 2> 아동권리협약 개요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아동권리협약 채택 및 발효

- '89.11.20 : 유엔총회 「아동권리협약(CRC, Conven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채택
- '90. 9. 2 : 「아동권리협약(CRC)」 발효
- '90. 9.25 : 한국 비준 ※ 미국, 소말리아를 제외한 전 세계 192개국 비준(06년 현재)

□ 아동권리협약의 주요내용

- 4개의 기본원칙 : 무차별의 원칙(제2조),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제3조),
생존·보호·발달의 원칙(제6조), 참여의 원칙(제12조)
-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보장하는데 환경적 조건에 관계없이 아동의 생존권이 존중되고 그들의 잠재력이 최대한으로 발현되도록 지원·지지
 - 시민적 권리의 보호 : 생명권, 국적권, 신분보존권, 의사 표시권 등
 -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권리의 보호 : 가족과의 동거권, 양육 받을 권리, 입양, 건강 및 의료지원, 사회보장, 교육권, 결혼가정과 장애 아동의 보호, 문화활동 참여권 등
 - 기타 권리의 보호 : 학대, 유기, 착취, 인신매매, 무력, 분쟁, 마약, 약물 등으로 부터의 보호

□ 협약당사국의 의무

- 협약상 권리실현 조치 : 입법, 행정, 사법 기타 조치 등
- 국가적 가용자원의 최대한도 내에서 조치를 취할 의무
- 협약내용과 관련된 국내 이행상황에 관해 협약 발효 후 2년 내에 제1차 보고서를 제출하고 그 이후에는 매 5년마다 국가보고서 제출
 - 제1차 보고서 : '94년 제출, '96년 심의
 - 제2차 보고서 : '00년 제출, '03. 1. 15 심의
 - 제3차 보고서 : '08년 제출 예정

<참고 3> 아동의 무력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 18세 미만의 적대행위 직접참여 금지를 보장
 - 18세 미만의 군대징집 금지 보장
 - 18세 미만의 무장단체 모집 및 적대행위 이용 금지와 이러한 관행에 대한 처벌을 위한 법적 조치의 채택
- 우리나라 이행조치사항
 - 각 군 규정의 현역병 입영 연령을 동 의정서 취지에 맞게 기존의 만 17세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상향조정('04.12.31, 병역법 개정완료)**
 - 18세 미만이 전투에 참가하지 않도록 「**전시투입 등에 관한 공군규정 15-1**」 등 관련규정 개정 추진 중
 - ※ 전시기본임무개정내용(기지경비, 기지복구 등→ 일반피해복구, 교육 등)

<참고 4> 아동매매·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의 금지에 관한 선택의정서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 아동매매, 성매매 및 아동음란물(포르노그래피)로부터 아동보호
 - **관련범죄의 발생시 자국 형법에 포함되도록 하여 행위의 심각성을 바탕으로 적절한 벌칙과 처벌 보장**
 - 자국내 등록된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한 **자국의 관할권을 확립하기 위한 조치마련**
 - 의정서상 금지된 행위로 **피해아동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치마련**
: 증인으로서 아동의 취약성 인정, 사법절차 전체 과정에서 피해아동 지원, 정부유출 방지, 협박과 보복으로부터 피해아동 및 아동의 가족 보호
- 우리나라 이행조치사항
 - 아동복지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성보호법에 의하여 **아동매매, 성매매, 아동음란물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등 선택의정서 내용 충족**
 - **아동·청소년에 대한 상업적 성착취의 근절을 위한 제도보완** 지속 추진

아동권 관련 국내법령 정책 현황과 과제

이 용 교(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1. 아동의 권리란 무엇인가?

1) 아동의 권리에 대한 역사

아동도 성인처럼 권리를 가진 인격체라는 평범한 사실이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된 것은 그리 오래지 않다. 아동의 권리가 국제협약으로 제정된 것은 1989년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서 비롯된다.

역사적으로 볼 때 시민의 인권이 확인되고 선언된 것은 18세기 후반이었지만, 아동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 인식되지 않았다.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존중되어야 한다는 사상은 루소에 의해서 전개되었다. 그는 프랑스 사회가 아동을 ‘어린 인간’으로 보지 않고 ‘작은 어른’ 또는 ‘어른의 축소판’으로 취급하고 인간성을 무시하며 형식적인 교육을 한데 대해서 비판하고 인간으로서의 아동의 고유한 가치와 인권을 주장하였다.

아동의 권리가 국제적 문서로 된 것은 1924년 국제연맹 총회에서 ‘아동의 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이 채택됨으로써 공식화되었다. 이 선언은 전문과 5개조의 본문으로 되었는데, 그 전문에서 “모든 나라의 남녀와 인류가 아동에 대하여 최선의 것을 주어야 할 의무를 진다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분명히 하였다.

1959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아동의 권리선언’은 전문과 10개조의 본문으로 구성되었는데, 이 선언은 아동을 단순한 구제나 보호의 대상으로서 뿐 아니라 인권이나 자유의 주체로서 파악하였다.

아동의 권리를 ‘선언’에서 ‘협약’으로 바꾼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은

오랫동안의 논쟁을 거쳐서 채택되었다. 국제인권규약이 발효된 1976년 유엔 총회에서는 아동의 권리 선언 20주년인 1979년을 '국제 아동의 해'로 결정하였다. 국제 아동의 해는 아동의 인권 실현을 촉진할 목적으로 결정되었고, 아동의 권리협약의 채택에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은 그 심의과정에서 '아동관'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아동을 권리향유의 주체로 파악하는 아동관에서 권리행사의 주체로 인식하는 아동관으로 변화되었다. 그 단적인 예가 아동의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에 관한 조항이고, 또한 매스미디어에 대한 아동의 접근에 관한 조항이다. 이 협약은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전원 일치의 찬성으로 채택되었고, 1990년 9월 2일부터 국제법으로 발효되고 있다.

한편, 한국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을 1990년에 서명하고, 1991년 11월 20일에 비준하였다. 한국 정부는 비준과정에서 부모와의 면접교섭 유지권, 입양허가, 상속권보장 등 3개 조항을 유보하였다.

국제조약은 헌법에 의해서 국내법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고 할 때,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헌법 제6조).

2) 아동권리의 주요 내용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은 무차별의 원칙, 아동의 최선의 이익우선과 함께,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과 참여권리라고 하는 4개의 주요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 생존의 권리 :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
- 발달의 권리: 교육, 놀이, 여가, 정보를 누릴 권리, 문화활동,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
- 보호받을 권리: 각종 착취와 학대,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형법 등의 폐습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참여의 권리: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권리, 책임감 있는 어른이 되기 위해 아동자신의 능력에 부응하여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가질 권리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은 전문과 본문 54개조로 되어 있으며, 본문 54개조는 3부로 나뉘어져 있다. 제1부는 협약의 실제인 아동의 권리 조항(제1조~제41조), 제2부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와 당사국의 관계규정(제42조~제45조), 제3부는 협약가입 등 절차와 협약 개정절차에 관한 규정(제46조~제54조) 등이다. 그중 제1부의 주요 내용을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 협약의 대상인 아동을 18세 미만의 자(1조)로 정의하고, 출신이나 성별을 포함한 무차별의 원칙(2조), 아동의 최선의 이익 우선(3조)
- 아동을 보호의 대상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 규정하며 아동의 생명권(5조), 아동이 국적을 가질 권리(7조), 표현, 종교, 집회의 자유(13~15조), 고문이나 사형 또는 무기형금지(37조) 등의 시민의 권리에 관한 적극적인 보장
- 부모로부터의 분리제한(9조), 불법해외 이송금지(11조), 부모나 보호자의 양육책임(18조), 아동학대로부터의 보호(19조), 요보호 아동에 대한 국가보호(20조), 입양에 있어서의 아동의 최선의 이익 우선(21조) 등 가정환경보호
- 아동의 생존과 발달의 보장(6조), 장애아 보호(23조), 건강관리, 질병과 영양실조 퇴치, 산모보호, 가족계획, 유해한 전통관습의 폐지(24조), 사회보장권(24조), 영유아보육서비스 제공(18조) 등 제반 아동복지 보장
- 의무교육(28조), 여가와 문화적 활동 보장(32조)
- 난민아동(22조), 전쟁시의 아동(32조) 등 위급한 상황에 처한 아동보호, 체포나 구금(37조)과 형사 피의자(40조)가 된 아동의 권리보호, 아동의 노동력 착취금지(32조), 성적학대(34조), 마약으로부터의 보호(32조) 등 아동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2. 영유아기에 아동의 권리

영유아기에 있는 아동이 침해받기 쉬운 권리는 다음과 같다.

[생존권]

- 낙태를 당한 우려가 있다.

[보호권]

- 미혼모가 출산할 때 국외로 입양되어 정체성에 혼란을 가질 수 있다.
- 국내에 입양되는 경우에도 자신의 뿌리를 찾기 어렵다.
- 이주여성 가정에서 태어날 때 '혼혈'로 차별을 받을 수 있다.
- 빈곤으로 적절한 양육을 받지 못할 수 있다.
- 맞벌이로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발달권]

- 빈곤 가정의 경우 다양한 교육적 경험을 하기 어렵다.
-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의 유형과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

[참여권]

- 영유아의 의견은 흔히 무시되기 쉽다.

[사례연구] 국내입양의 활성화로 국외입양의 최소화

1) 해당 분야의 실태

- 국가 경제의 상황에 관계없이 매년 4000명 정도의 아동이 새로운 부모를 찾고 있음.
 - 특히 해외로 입양되는 아동의 숫자가 매년 2000여 명 정도로 국내 입양보다 많음.
 -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1958년부터 2003년까지 국내 입양 아동수는 6만4천5백5명이 고, 국외 입양 아동수는 15만2천7백86명으로 국외입양이 2배가 많음.
 - 1990년에 입양아동 4,609명 중 2,962명(64.3%)이 국외로 입양되고, 2002년에는 4,059명 중 2,365명(58.3%)이 국외로 입양됨.
- 6.25직후 혼혈인을 입양하면서 해외입양이 시작되고, 정부는 입양을 민간입양기관(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함.
 - 입양은 수요자(입양부모)와 공급자(입양기관)가 입양아동을 금전(입양비)으로 거래하는 사적인 일로 전락시킴.
 - 정부는 입양기관에 약간의 보조비를 지원하고, 입양비의 공시가를 지정해주는 소극적인 역할에 머무르고 있음.
 - 입양기관의 운영은 거의 국내 입양부모가 내는 200만원 가량의 입양비로 이루어지고 입양기관은 수수료가 많은 해외입양을 중단하기 어려움.

- 국내입양 활성화의 걸림돌은 혈통주의 관습으로 인한 비밀입양임.
 - 공개입양이 차츰 늘고있긴 하지만 부부만(12.9%), 일부 가족만(22.8%), 가족만(38.2%) 아는 비밀입양이 대부분이고, 공개입양은 26.1%에 불과함.

2) 관련 분야에 대한 국가의 정책

- 한국정부는 기존 입양특례법을 '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으로 전면 개정하여, 1996년 1월부터 시행함.
- 입양기관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은 매우 미미하고, 입양 후 사후관리는 사실상 6개월 후에는 종료됨.
 - 더욱이, 국외 입양인에 대한 사후 프로그램은 해외 입양기관에 위임되어 있고, 성장한 국외 입양인에 대한 사후관리는 홍보성 프로그램 수준을 벗어나지 못함.
- 장애아동의 국내입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장애아동을 입양할 경우 양부모에게 매월 양육비로 50만원을 지원함.
 - 2005년부터 의료급여 1종 서비스를 주기로 한 것은 전향적인 정책임.
 - 2004년 의료급여법이 개정되어서, 국내 입양된 18살 미만의 어린이 3만 1700명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게 됨.
- 인천광역시가 2004년부터 입양된 영아 한 명당 월 10만원, 연간 120만원씩 3년 동안 모두 4억3200만원의 예산을 지원키로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국내입양을 촉진하려는 시도임.

3)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

8. 위원회는 위와 같은 권고를 재반복한다. 1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 담겼으나 이행되지 않았던 권고들과 이번 2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 담긴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에 촉구한다.

유보

9.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협약 9조3항, 21조 a항, 40조 2-b-v항을 유보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

10. 위원회는 유죄를 선고받은 청소년의 항고권에 유념하며,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협약 40조 2-b-v항에 대한 유보를 철회할 것을 한국 정부에 촉구한다. 또한 비엔나선언과 행동프로그램(1993년)에 부응하여 협약 21조 a항과 9조 3항에 대한 유보를 철회할 수 있도록, 아동과 부모 모두에게 상호면접권을 보장하게끔 민법을 신속 개정하고, 국내입양에 대한 대중의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강화할 것을 한국 정부에 촉구한다.

입 양

42. 위원회는 보편적인 부정적 문화적 전통으로 인해, 국내입양이 허가나 자격 있는 기관에 의하지 않고 이뤄질 수 있으며, 그러한 입양이 아동최상의 이익 또는 (적절한 경우)아동의 견해를 반드시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여전히 우려한다. 또한 위원회는 높은 숫자의 해외입양에 대해 우려를 갖고 주목한다. 해외입양이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되고 있지 않으며, 한국정부가 해외입양과 관련 '아동의 보호와 협력에 관한 1993년 헤이그 협약'을 아직 비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1996년 1차 권고에서 언급했던 우려를 반복한다.

43. 위원회는 한국정부에 1차 권고를 반복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a) 협약 21조의 원칙과 조항에 완전히 부응하도록 법률을 개혁할 목적으로 국내 및 해외

입양 체계를 포괄적으로 재검토하라.

b) 해외입양과 관련된 헤이그 협약을 비준하라.

4) 입양정책에 필요한 정책제안

- 반드시 국가 혹은 국가의 위임을 받은 기관만이 입양을 알선하도록 하고,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유보조항을 없앴.
- 입양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의 경비를 국가가 부담하고, 입양수속비를 양부모에게 요구하는 것을 금지.
- 전체 아동 중에서 국내입양의 비율을 현재의 41.8%에서 매년 5%포인트씩 상향시킴.
- 입양인을 위한 이중호적제도 혹은 친양자제도의 도입.
- 미혼모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아동부양수당을 지급하고, '입양대상이 되는 아동'을 축소.
- 해외입양과 관련된 헤이그 협약을 비준함.

3. 초등학생기에 아동의 권리

초등학생기에 있는 아동이 침해받기 쉬운 권리는 다음과 같다.

[생존권]

- 빈곤가정의 경우에 결식의 우려가 있다.
- 빈곤 가정의 경우에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등 건강권을 보장받기 어렵다.
- 통학 길 보행 중에 교통사고로 사망할 수 있다.

[보호권]

- 신체적 학대와 성추행에 노출될 수 있다.
- 방과 후에 방임으로 각종 문화적 경험에서 박탈당할 수 있다.

[발달권]

-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한다(교육기회 박탈- 정인지체 등의 이유)
- 부모의 이혼 시에 적절한 생활지도를 받기 어렵다.

[참여권]

- 부모의 이혼 시에 어느 쪽 부모와 살 것인지에 대한 의사표명권이 없다.
- 이혼 시에 부모와의 면접교섭권이 없다.

[사례연구] 이혼가정의 아동양육비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1) 해당분야의 실태

아동의 보호를 위한 부모와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 이혼자녀의 수도 급증, 2002년 통계청의 인구동태조사에 의하면, 이혼건수는 1970년 11,600건, 1990년 45,700건, 2000년 120,000건, 2002년 145,000건에 이룸. 전체 이혼 건수 중 협의이혼은 121,863건으로 전체 이혼의 83.8%에 이르고, 재판이혼은 22,711건으로 15.6%, 미상은 750건으로 0.6%를 차지함.

○ 이혼당시 20세 미만의 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가 101,351건으로 전체 이혼가정의 69.7%이고, 그 중 2명이 50,826건(34.9%)으로 가장 많고, 1명이 43,650건(30%), 3명 이상이 6,875건(4.7%)의 순이며, 자녀가 없는 경우는 41,895건(28.8%)으로 나타남.

○ 여기서 20세 미만의 자녀를 둔 101,351건의 이혼건수에 자녀수를 곱하면, 최소한 16만 여명 이상의 미성년자녀가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경제적·심리적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추론됨.

○ 이처럼 이혼 가정은 점차로 증가하고 있는데 반하여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아동들의 인권은 소홀히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음. 부부는 이혼으로 인하여 법적으로 부부관계가 해소되지만, 자녀는 부모의 친자관계 혹은 양육자와 피양육자 관계를 지속함에 도 불구하고 이혼의 상황, 양육자의 결정 그리고 이혼후의 경제생활에서 아동의 인권이 경시되고 있음.

○ 한 연구조사 결과에 의하면, 협의이혼의 경우 친권자 양육자 지정은 모 68.3%, 부 30.7%로 모로 지정된 경우가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남. 이 같은 결과는 재판상 이혼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서 모 61.1%, 부 27.8%의 비율을 보임.

○ 이혼가정 특히, 어머니가 자녀를 맡게 된 가정의 경우 현실적으로 여성은 남성에게 비해 낮은 임금을 받을 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이혼 여성들의 경우 육아나 가정을 위해 자신의 일을 중단했던 상태에서 재취업이나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기 때문에 이혼에 따른 정신적, 사회적 문제와 함께 경제적 문제로 인해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됨.

○ 신현숙 외(2001:39)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실제 조사 대상 이혼가정의 아동들이 이혼으로 겪는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높은 비율인 26.5%를 차지하고 있음.

○ 한국여성민우회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한부모의 경우 경제적인 문제와 사회적 지지기반의 문제로 다수가 친인척과 함께 기거하고 있으며, 1/3이 현재 일자리를 가지지 않았고 일자리를 가지고 있더라도 임시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음, 이는 여성의 노동현실로 가사와 생계를 동시에 꾸리는 것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암시함.

○ 뿐만 아니라 80%가량의 한 부모가 저소득층 기준이 되는 4천 5백만 원 이하의 재산을 가지고 있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많았고 이혼 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받지 못한 경우가 절반 이상을 차지,⁶⁾ 이 같은 조사결과를 종합해보면 대부분의 이혼가정의 60% 이상이 자녀의 양육을 여성이 책임지고 있지만 여성이라고 하는 특수한 신분으로 인해 취업 또한 매우 제한적이거나 혹은 임금수준이 열악한 일용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자녀의 건강한 양육에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제적 자립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6) 이혼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이 같은 연구결과는 이혼가정을 대상으로 한 광배희(2001:13)의 조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조사대상 588명 가운데 월수입이 100만원 이하인 이혼가정이 38.5%에 불과했고, 26.9%가 51~100만원, 그리고 전체 이혼가정의 절반이 넘는 53.8가 100만원이하여서 이혼 여성가정의 경제적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이혼가정 아동보호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 이혼율의 급속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혼가정 아동보호정책은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몇 가지 이혼관련 조항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이혼가정의 아동이 겪는 문제를 다루는 정책이나 전담부서는 없는 실정임. 특히 이혼가정이 당면한 직접적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양육비문제에 대해서는 그 법적 규정이 너무 비현실적이거나 불합리해서 이혼가정의 아동이 적정한 법의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음.

○ 이혼가정의 아동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제도상의 문제들을 보면, 첫째, 이혼 시 당사자의 협정 또는 법원의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고, 양육책임의 중요한 기준을 부모의 재정적인 측면에 두고 있어 자녀의 복리가 간과되고 있음. 우리나라의 이 같은 법률적 태도는 이혼과정에서 양육권자 결정시 '자녀의 복리'의 원칙을 중요한 판단근거로 삼고 있는 외국의 입법례에 상반되는 것임.

○ 두 번째는 양육비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 강력한 환수방법과 함께 법적 제재장치가 없음. 자녀양육의무를 공동으로 담당하여야 할 상대방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경제적 곤란과 함께 이혼가정자녀의 복리가 위협을 받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양육비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않는 상대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하고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임.⁷⁾

○ 마지막으로 양육비의 산정이 너무 비현실적이어서 이혼가정의 자녀양육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우리나라는 양육비 산정과 관련하여 협의로 정하거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정한다고 하는 추상적 규정만을 두고 있어 현실적으로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양육비의 액수와 합의나 판결로 책정된 양육비의 액수가 상당한 차이가 있음⁸⁾. 현재 우리 법원은 자녀양육비의 산정을 가정의 수입정도나 재산의 정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로 자녀 1인을 기준으로 월15만~30만원 선에서 인정해주고 있음.

○ 양육비 산정과 관련하여 또 다른 문제점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 중 일방이 법원에 양육비 신청을 해서 재판을 통해 실제 양육비를 지급 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완책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음.

3) 주요 외국의 관련 제도

○ 일본은 이혼 후 자녀의 양육비 부담은 이혼 시에 양육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결정된다고 해석되고 있음. 그러나 조정이혼이나 재판이혼의 경우는 제외하더라도 이혼의 90%를 차지하는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양육비 부담을 정확히 결정한다고 하는 제도적 보장은 존재하지 않지만 양육비는 일반적으로 부부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부모의 재산, 수입, 재산분할액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그 액수를 정하고 있고 그 지급방법은 일시불로 하거나 정기금으로 할 수 있음.

7) 당사자간의 합의나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양육비가 인정되었다 할지라도, 이를 그대로 이행하는 경우가 오히려 드물다고 할 정도로 그 이행이 뒤따르지 않는 것이 우리 사회 전반의 분위기이다. 이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하는 것 외에 실제로 이행하느냐 여부는 법원과는 무관한 일이고, 당사자들이 알아서 다른 조치를 취하든지 해야 한다'는 소극적이고 방관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윤덕경·장영아, 2002:42)

8) 이혼가정에 대한 한 연구조사에 의하면, 양육비가 합의나 판결로 책정된 경우 '월 21~30만원'이 가장 많았는데, 일반인의 경우 초등학교 이하는 월 31~40만원, 중고등학생은 월 61만원이상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던 것과 비교해 볼 때, 법원의 양육비 액수가 지극히 비현실적임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곽배희, 2001:14).

○ 일본은 양육비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조정이혼, 심판이혼, 판결이혼 나아가 재판상 화해에 의한 협의이혼에서 양육비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서나 공정증서가 채무명의로 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함. 뿐만 아니라 가사소송법을 통해 강제집행이 어려운 경우 양육비지급 의무의 이행확보 기능을 가진 이행권고, 이행명령, 기탁의 제도를 규정하여 이혼가정을 보호하고 있음. 이외에도 생활이 곤란한 이혼가정을 위해 아동부양수당과 모자복지자금대여, 모자복지시설의 설치 등을 규정하여 이혼가정의 아동보호를 위한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독일은 양육비 확보를 위해 1998년 보좌제도를 도입하여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일방에 대해서는 물론 그 밖의 부양의무가 있는 친족에 대해 보좌로 인정된 아동복지기관이 자녀를 대리하여 양육비를 청구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긴급한 생활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혼가정을 위해 ‘양육비선급제도에관한법’을 제정하여 당장 양육비를 필요로 하는 자녀에게 우선 국가에서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국가가 양육비지급의무자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구상권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 영국은 양육비를 확보를 위해 법적으로 전배우자의 부양비 지급을 강제하고 있어 아동양육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있고, 아동보조청이 양육비를 대신 받아주는 등 법적기구를 설치하고 있어 이혼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음.

○ 독일은 양육비 산정에 있어서도 1991년 제정된 아동지원법은 상세한 규정과 수식을 포함하여 정확한 수학적 공식에 따라 산정되어 정확성과 확실성, 공평이 확보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객관적이고 과학적 기준에 의한 양육비 산정과 함께 지급의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의무위반자에 대해 최고 6주간의 구금형이 부과하는 등 강력한 형사권의 발동을 통해 양육비의 미지급으로 인한 이혼가정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있고, 이혼가정의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수당과 함께 보편적인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소득을 보장해주고 있음.

○ 미국은 기본적으로 양육비 지급의 자에 대한 임금원천징수 방법을 입법화하여 양육비를 원천징수하고 있으며 그 외에는 정기적인 청구, 체불통보, 재산압류, 자산압류 및 매각, 운전면허를 비롯한 다양한 종류의 면허증 취소, 연방구속, 벌금 등의 강력한 방법을 통해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고 있음. 아울러 양육비 산정과 관련해서도 1975년 사회보장법에 아동부양이행강제제도를 신설하여 양육비 산정을 입법화함.

4) 이혼가정의 아동보호를 위한 정책제안

가) 이혼 시 양육권자 지정 의무화

○ 이혼 시 자녀 양육문제에 대해 당사자의 협의나 법원의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현행법과 제도를 개정하여 이혼 신고서에 이혼 후의 자녀양육에 관한 합의내용, 예를 들어 양육자는 누가이고, 양육비는 누가 얼마정도 지급할 것인지를 기재하도록 하고, 당사자 간의 문제가 협의되지 않으면 이혼을 할 수 없게 하는 등 자녀 양육에 필요한 필수적인 조건들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해 함.

○ 재판상 이혼 시 친권, 양육권 등 자녀문제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내용이 자녀복리에 반하는 경우 법원은 이와 다른 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하고, 협의든 재판이든 결정된 친권자에게 자녀에 대한 책임을 법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함. 필요하다면 이혼재판에서 이혼이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라고 하면 그 판결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구체화되어야 함.

나) 양육비 산정기준을 명확하게 법률로 규정

○ 이혼가정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로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현행 양육비 산정기준을 개정하여 여러 상황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보다 현실적인 금액으로 양육비가 산정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양육비 산정과 관련하여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현행 법규정을 개정하여 법률이 정한 구체적 기준에 의해서 양육비 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 기준을 명확하게 법제화하는 작업이 요구 됨.

다) 실효성 있는 양육비 지급방안의 마련과 함께 양육비 선급제도의 도입

○ 양육비 지급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제도로 지급 받고 있는 못한 현실을 고려하여 양육비지급에 대한 이행감독제도의 신설과 함께 양육비 지급의무자 스스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형사처벌규정을 도입해야 함.

○ 양육비 지급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이혼가정의 긴박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양육비 선급제도를 도입하고 이혼시 당사자가 법원에 양육비를 공탁하게 하고 자신들이 양육할 때는 공탁금을 회수하여 양육토록 하기위한 양육비 공탁제도를 도입해야 함.

라) 이혼가정의 아동보호를 위한 보다 포괄적인 복지정책의 수립

○ 이혼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부조차원의 복지대책들이 대부분 절대빈곤층에 한정되어 있어 극빈층을 제외한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복지적 보호가 미흡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이혼가정의 구직활동 지원과 함께 학비와 아동양육비의 상향조정, 상담 및 심리 프로그램,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보호 서비스에 대한 지원 등의 이혼가정 아동을 위한 보다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복지정책이 수립되어야 함.

○ 이혼가정을 위한 별도의 아동수당 및 소득보조제도의 신설, 이혼가정의 경제적·사회적 상황에 따른 총괄적 상담 및 지속적 지원체계의 마련도 보다 구체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

[사례연구] 아동학대예방센터의 확충과 연계 강화

1)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운영실태

○ 2000년 7월 개정된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학대 개념을 규정하고, 학대당하는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마련함.

· 동 법은 아동학대 관련 16개 조항을 삽입하여 아동 보호체계를 처음으로 명시하였음. 아동학대 관련 사항은 아동학대 처벌, 교육적 방임, 피학대 아동의 전학, 학대자 강제입원조치, 피학대 아동의 격리 및 일시보호와 관련된 조항임.

○ 학대아동을 위한 보호서비스를 수행하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이하 아동학대 상담센터라 칭함. 아동복지법 제24조)의 설치근거는 아동복지법 제24조, 제27조, 제31조 제4호에 규정됨.

· 아동학대 발견 시 신속하게 신고 받을 수 있는 긴급전화 설치를 명문화 함. 1391 긴급전화는 아동복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동학대상담센터에 설치되어 있으며, 긴급전화는 전국적으로 1391의 통일된 번호로 매일 24시간 상담을 받고 있음.

· 아동보호 체계는 보건복지부의 주도 아래 중앙 아동학대 상담센터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여기에서 연구 개발된 자료들이 지방아동학대 상담센터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함. 중앙 아동학대예방센터는 전국 차원의 아동학대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확립과 아동학대 정책제언을 통해 학대받는 아동과 가족의 회복을 지원하고, 일반 시민들의 아동학대 인식 증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2001년 10월 보건복지부에 의해 설립됨.

- 2004년 7월 현재 19개 시·도 아동학대예방센터가 설립되었으며, 2001년 10월 18일에는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가 세워지고, 2004년 5월 전국에 국고지원을 받는 소규모 아동학대 예방센터 8개소가 추가신설 됨. 국고지원을 받지 않고 법인자체부담에 의해 운영되는 소규모 아동학대예방센터도 5개소 신설되어 총 13곳의 소규모 아동학대예방센터가 신설됨. 2004년 7월 현재 전국에 27개소의 아동학대 예방센터가 운영하고 있음.

- 각 아동상담센터는 학대 아동의 발견, 신고 접수, 개입, 현장조사, 아동학대 사례판별, 치료 및 보호, 종결, 연구조사, 교육 및 홍보 캠페인을 통한 예방활동을 전담(동법 제14조 제 1항)하는 직접적인 아동보호 서비스전달체계 임.

- 중앙아동학대 예방센터는 직접적인 아동보호 서비스 즉, 현장조사, 응급보호 조치, 학대 아동에 대한 개입프로그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와 관련된 다른 행정 부서와의 업무조직과 협조안을 마련하고 아동학대와 관련된 사회적 서비스의 전반적 방향을 제안하여 각 지방 아동상담센터가 구체적인 아동보호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지방 아동학대 예방센터의 업무를 총괄.

- 소규모 아동학대예방센터는 아동복지법 제 25조에 의거 잠재위험 가정 및 피학대 아동에 대한 관리를 중점적으로 실시하여 학대의 재발방지와 학대예방체계를 구축. 이외에도 24시간 신고전화운영 및 현장조사를 통해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고, 일시보호 결정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아동이 발생할 경우 지방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서비스를 연계해 주어야 함. 따라서 매일 지방아동보호 전문기관에 매일 사례현황을 보고해야 함. 그리고 가정방문 등을 통해 사후관리를 행함.

- 아동학대 상담센터의 운영인력은 전국에 총 162명으로 실제 아동보호 서비스를 담당하는 상담원은 각 기관별로 7~8명임.

- 중앙아동학대 상담센터 및 각 지역 아동학대 상담센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보호 전문기관의 설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는 아동복지법 제 31조에 의거 국고지원을 받고 있으며 소규모 아동학대 상담센터는 정부가 지정한 8곳만 국고지원을 받고 이외의 법인단체가 자체적으로 설치인가를 받은 센터는 자체 예산에 의해 운영됨. 국고지원내용은 아동학대 상담센터의 인건비, 운영비 및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 받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정, 운영하고자 하는 소규모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인건비, 운영비, 설치비의 일부를 자체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함.

○ 아동학대예방센터 조직체계

- 보건복지부 => 시·도 => 지방아동보호전문기관 => 소규모아동보호전문기관

○ 사례판정위원회의 구성

- 각 분야의 전문가 8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된 사례 판정위원회는 아동학대 사례가 불명확하여 판단하기 어려운 사례, 부모가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에 대한 판정, 장기보호가 필요한 아동학대 사례에 대해 상담원과 자체사례판정위원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만 학대 사례에 개입하게 됨.

○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1997년 이후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며, 아동학대 예방센터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2001년부터 학대로 발견되는 사례가 급격하게 늘어났음.

- 따라서 2000년 전체 신고건수가 1,678건이었던 것에서 2002년에는 2,946건, 2003년에는 4,983건이었음. 이는 2003년에 비해 20% 증가한 것이며, 2001년에 비하면 35.7%가 증가한 것임. 2003년도에 신고된 아동학대 사례 중 각각의 학대를 중복학대로 따로 구분해서 분석한 결과, 신체학대가 347(11.1%), 정서학대 207(7.1%), 성학대 134(4.6%), 방임

965(33.3%), 중북학대 1155(39.5), 유기 113(3.9%)로 나타났고, 이를 다시 아동학대 사례 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방임이 1,514건(35%), 신체학대 1,315건(30.4%), 정서학대 1,172건(27.1%)이며, 성학대 및 유기는 203건(4.7%)와 126건(2.9%)이었음.

2) 아동학대예방센터에 대한 정부 정책

가) 민간기관에 의한 위탁운영의 문제

○ 학대당하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학대사업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증가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에서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를 비롯하여 모든 아동학대 예방 센터들이 민간기관에 의해 전적으로 위탁 운영되는 현행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운영체제는 사실상 학대아동에 대한 국가의 최소한의 책임만이 제한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것임.

○ 이러한 소극적인 국가책임은 아동학대예방센터를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만을 국가가 보조하도록 되어 있는 아동복지법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음. 민간단체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아동보호 서비스는 학대아동을 예방하거나 치료 보호하는 과정에서 의료계, 법조계, 학교, 경찰 등의 다양한 종류의 사회자원을 활용하는 사회자원들 간의 공조체제와 협조체제 구축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됨.

○ 학대아동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서비스체계간의 협조체제나 공조체제를 이루지 못하여 학대당하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은 예방센터의 자체 역량에 따라 커다란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결국 아동학대예방센터간의 보호 서비스의 질적 차이를 유발할 것임. 아울러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보호가 불가능할 것임.

○ 그리고 민간기관이 위탁, 운영할 경우 아동학대 관련 전문인력을 확보하기보다는 기존의 인력을 아동학대 예방사업에 투입할 가능성이 높아짐. 따라서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고, 아동 주변의 다양한 요인의 영향으로 발생하는 아동학대에 효과적,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 됨.

○ 민간기관을 아동학대예방센터로 지정함으로써 지정, 또는 설치되는 과정에서 민간기관들간의 과열경쟁을 부추길 수 있고, 센터운영 신청시 정부가 법인의 자부담을 요구함으로써 법인 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한 기관들은 센터신청이 불가능한 실정임.

나) 아동학대 예방센터의 권한과 관련된 문제

○ 아동복지법 제 27조에 의거 상담센터의 상담원은 아동학대 현장에 출동하여야 하고, 현장을 조사하여 현장조사서를 작성해야 함(조사권만 부여). 아동학대 행위자로부터 격리 또는 치료가 필요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현장조사 시 상담원은 가해자의 저항에 직면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신변안전의 문제가 있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경찰의 업무보조에 지나지 않는 경우도 있음.

○ 실제로 아동학대예방센터 상담원들의 권한이 제한되어 있어 가해자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는 경우도 다수 있음. 따라서 준사법권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해 줄 필요가 있음.

다) 아동학대와 연관된 기관들의 협조체제 유지를 위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음

○ 아동학대에 관여할 수 있는 각 시, 도, 군, 구의 의료계, 법조계, 경찰, 학교 등의 역할에 대한 의무규정을 명시하고 있지 않음.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보호실행 시 지침이 되는 업무수행방식과 절차를 언급하고 있으나 어느 사항을 어느 단체가 개입해서 도와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음. 아동보호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각 조직체를

흡수할 수 있는 단체 연합을 구성하는 것과 같은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따라서 각 지역에 배치되어 있는 아동학대예방센터가 자체적으로 아동학대 유관기관의 참여를 끌어내야 하는 형편 임. 전국 아동학대예방센터들은 대부분 체계적이고 공식적인 network을 갖추고 아동학대 관련 사회영역과 연계서비스체계를 구축하기보다는 필요할 경우 임시방편으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협조체계를 이루는 기관도 주로 병원이나 경찰 등 특정기관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며, 관련분야 전문가들간의 정기적인 접촉도 전혀 없거나, 1년에 1~2회 정도에 그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현장조사시 경찰과의 동행하는 경우가 7%에 그치고 있고, 피해아동의 99.6%, 가해자의 99.4%가 센터 내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만을 제공받았다 (보건복지부, 2003)는 사실은 아동보호서비스의 협조체계 부재를 여실히 보여주는 예임.

○ 이러한 체계는 아동학대 사업이 각 기초단위의 표면적인 사업에 그칠 공산을 높여주고, 아동에게는 이들의 최선의 이익에 맞는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가능성을 높여 줌.

라) 아동학대예방센터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의 부족

○ 정부의 각 센터에 대한 예산지원을 보면, 2003년의 경우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는 연간 인건비 1300만원 정도 (8명/인, 년)와 운영비 4200만원 정도를 지원 받았고, 지방아동학대예방센터의 경우 인건비 1500만원정도 (8명/인, 년)와 운영비 2200만원정도를 지원 받았음.

○ 2004년의 경우 운영비, 사례관리프로그램, 장비비 등으로 중앙아동예방센터에 대해 총 2억9천 2백만 원이 지원되었고, 지방아동학대예방센터는 인건비, 운영비, 현장조사비, 장비구입비, 피해아동 검사비 및 치료비, 소규모 아동학대예방센터 운영 등의 명목으로 총 17억8천 2백만 원이 지원됨.

○ 그러나, 이러한 규모의 예산은 아동학대의 조기발견, 치료, 사후관리, 예방, 조사연구사업 등 방대한 아동학대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것이고 아동학대서비스에서 요구되는 전문인력을 확보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실정 임. 예산의 제한은 각 예방센터들이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단편적이고 일시적인 사업에 치중할 가능성을 높임.

○ 예방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인에 대해 일정액의 자부담을 하도록 하는 현행제도는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전문적인 역할에 장애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국가의 전적인 지원으로 전환되어야 함.

마) 각 아동학대예방센터간의 역할과 의무규정

○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와 지방아동예방센터 그리고 소규모아동학대예방센터간의 역할에 대한 중복이 있고, 지방아동학대예방센터와 소규모아동학대예방센터의 정보교환이나, 긴밀한 협조체제를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이 없음.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의 경우 각 지역 아동예방센터의 기능의 자율성을 촉진하면서 아동보호 서비스의 질적 동질화를 이룰 수 있는 서비스 프로그램 운영관리에 대한 체계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음.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수적 증가에 맞는 기관들 간의 관계규정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업무의 중복을 막고 아동의 필요에 접근하는 효율적인 서비스와 지역 접근성을 높여 위험상황에 아동들이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음.

바) 아동학대예방센터 인력의 부족 및 예방센터의 수적인 부족

○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상담원들의 역할은 매우 포괄적임. 상담원이 사례관정위원회 등을 통해 자문을 구하는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 학대 아동의 발견에서부터 학대 아동의 진단과 보호, 치료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상담원의 판단에 의해서 아동보호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음. 이러한 상담원의 종합적인 역할이 갖고 있는 문제는 사후관리의 미흡으로 나타나고 있고, 상담원의 전문성의 약화를 필연적으로 가져올 것임. 상담원 한사람이 학대 아동사례를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한 현행 제도는 반드시 제고되어야 할 것임. 그리고 지역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례에 비해 상담원의 수가 부족함. 각 센터별 상담원의 수를 늘리고, 전문적 역할을 부여할 수 있어야 함.

사) 아동학대예방센터 사업의 제한

○ 우리나라 아동학대의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방임과 유기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예방센터에서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 다룰 보호대상 아동의 범주를 설정하고 인력을 보강하여 방임과 유기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임. 모든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조치는 어렵고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이 취약함.

아) 보호서비스과정에서 아동과 부모의 소외

○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아동보호서비스 과정에서는 아동과 부모는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외되어 자신들의 생각을 말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음. 아동과 부모는 단지 학대를 평가하기 위한 초기 사정과정에서 피조사자의 신분으로 참여할 뿐임.

3)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 아동학대와 방임

44. 위원회는 아동학대와 방임에 대한 보고를 받고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원조를 제공하는 아동학대예방센터가 여러 지역에서 설립된 것을 환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와 방임에 대한 진정을 접수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하며 피해자에게 원조를 제공하는 전국적인 체계가 미비함을 우려한다.

45.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권고한다.

- a) 아동학대와 방임관련 진정을 접수, 모니터, 조사하는 전국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법률 개혁을 포함하여 모든 적합한 조치를 취하라. 그리고 기소가 필요한 경우, 아동 친화적인 방식으로 해야하며, 법집행공무원과 사회사업가 및 검사들에게 이점에 관한 훈련을 하라.
- b) 개입 또는 처벌에 그치지보다는 가정폭력의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원조를 제공하고, 폭력의 모든 피해자들에게 상담과 회복, 재통합을 위한 지원을 보장하는 전국적인 대응 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아동학대예방센터 설립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라.
- c) 아동학대 및 방임의 문제 정도를 적절히 평가하고 그에 관한 정책 및 프로그램을 구상할 수 있도록 성별 및 연령대로 분산돼 있는 학대 및 방임의 가해자와 피해자에 관한 자료수집 체계를 구축하라.

4) 아동학대예방센터 확충과 연계체계를 위한 정책제안

- 학대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에서 국가책임의 강화
- 국가의 공적 책임을 행사할 수 있는 책임기관 개발. 아동학대와 관련된 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국가 주도적인 전문기관이 구성될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 아동보호 서비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의 공적 책임을 대행할 수 있는 기구와 전문인력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의 기능과 인력보강을 통해서 공적책임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확대, 개편할 수 있음.
 - 우선적으로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를 전국의 아동학대문제를 총괄할 수 있는 중앙조직

으로 전환시키고, 이 조직을 중심으로 현재 민간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 지역의 모든 센터들에 대한 지원 및 감독을 명확히 해야 할 것임. 아동학대예방센터들에 대한 공적 기관으로의 전환 내지는 공적 기관에 의해 전적으로 지원되는 전문기관으로 전환시켜야 함.

-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와 각 지역센터간의 관계 규정. 중앙센터와 중앙정부, 그리고 지방센터와 지방정부를 연계해 줄 수 있는 시스템 마련.

○ 아동보호의 공적 책임과 권한을 수행할 수 있는 아동보호 조정자 규정

- 아동학대사례가 발생했을 때 센터마다 각기 다른 사례에 대한 접근은 학대아동이 받게 될 아동보호서비스의 차이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임.

- 따라서 학대사례가 발견되었을 때, 이 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를 총괄해서 이끌어 나갈 책임과 권한을 소유한 아동보호조정자를 둘 수 있어야 센터간 혹은 기관간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접근방법의 차이를 줄일 수 있음.

○ 아동학대 관련 영역의 보호체계 안에서의 서비스제공의 의무 규정 마련

- 예방센터가 있는 각 지역별로 아동학대예방센터의 보호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의 참여를 부분적으로 의무 규정할 필요가 있음. 사회구조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각 관련영역이 아동보호의 필요한 시점에서 참여해야 할 의무규정과,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기관과 방안을 법과 지침서에 명시해야 함.

- 아동보호 과정에서 사법부의 조정자로서의 역할은 매우 절실하게 필요 함. 이를테면 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는 어떤 한 아동이 신체학대를 당했다고 판정을 내렸지만 부모가 이를 거부하고 아동에 대한 어떤 조치에 대해서도 거부할 때 이를 법적으로 조정해 줄 수 있는 사법부의 역할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함.

- 사법부가 아동학대를 인정하지 않는 부모의 강력한 저항이 있을 경우 이를 조정해 줄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수 있기 위해서 '판결의뢰 제도'를 마련해야 함. 부모가 학대사정을 거부할 경우 아동의 보호, 건강, 발달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명령권을 사법부가 발휘할 수 있는 아동사정명령(child assessment order), 조사나 격리, 또는 치료기관에의 인도 지시를 부모가 거부할 경우 부모책임 명령(parents responsibilities order) 제도도 필요함.

- 아동학대에 참여하는 관련기관들에게는 '아동보호 인증기관' 등과 같은 사회적 승인을 가시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하며, 사회적 지원혜택을 제공해 주어야 함.

○ 아동학대예방센터 상담원의 업무분담

- 사례관리자와 치료자를 구분하여야 함. 위기관리체계를 맡은 사람이 치료자가 되는 것은 실제로 어렵기도 하고 아동을 격리한 상담원이 부모교육을 하기는 어려움.

○ 사례판정위원회의 보완

- 사례판정위원들의 활동범주를 넓히고, 모든 학대사례에 대해 아동보호와 관련된 최종 의사결정 기구가 되어야 할 것임. 사례판정위원회의 기능확대와 상담원의 업무분담으로 사례관리의 전문화를 이룸. 사례판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지침도 마련되어야 함.

- 사례판정위원회는 가해자에 대한 치료명령, 갈등 시 조정위원회로 사례를 이관할 수 있는 권한, 사례의 종결, 사후관리 기관, 내용, 책임자 선정 등의 권한을 구체적으로 추가해야 함.

○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역할 정립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는 아동 성학대의 경우 성학대 아동의 조사, 사법부 의뢰 등을 원스톱으로 담당하기 위해 여성부의 지원으로 2004년 6월 설

립된 '해바라기 아동센터'의 역할 중복이 문제가 되기 때문임. 성학대 아동의 보호과정에 대해 아동복지법 시행령상에 명시해야 함.

○ 아동학대예방센터 직원에 대한 예산지원의 현실화

- 센터 당 직원은 8명이지만 예산지원은 5명에 불과하고 차량운영비 등이 지원되지 않아 야간 등 긴급 출동시 어려움이 있는 등 아동학대 예방센터의 운영여건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히 요청됨.

4. 청소년기에 청소년의 권리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이 침해받기 쉬운 권리는 다음과 같다.

[생존권]

- 0교시의 강요로 아침식사를 결식하기 쉽다.
- 우울 등으로 자살충동을 가질 때 적절한 보호를 받기 어렵다.
- 패스트푸드 등 몸에 좋지 못한 음식에 노출되기 쉽다.

[보호권]

- 부모나 보호자가 없을 때 '소년소녀가정'으로 지정되어 방임되기 쉽다.
- 성 매수나 성폭력에 노출될 수 있다.
- 약물오남용에 노출될 수 있다.
- 가출청소년의 경우에는 각종 범죄 등에 노출될 수 있다.
- 아르바이트에서 적절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 범죄를 저지를 때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

[발달권]

- 적절한 진로지도를 받지 못한다.
- 학교생활에서 다양한 선택을 하기 어렵다.
- 자립능력을 갖추지 못한 채 사회로 방출될 수 있다.
- 흔히 여자의 경우에 성차별 문화를 답습하도록 강요받는다.
- 사생활의 권리가 무시되는 경향이 있다.
- 통신의 자유 등을 제한받기 쉽다.

[참여권]

- 가정, 학교, 사회에서 의사결정에 참여하기 어렵다.
- 연령차별로 '참정권'을 보장받기 어렵다.

[사례연구] 위탁가정 등 대안가정 아동의 법적 권한 확보와 지원

1) 위탁가정 등 대안가정 아동의 보호실태

가) 요보호 아동의 발생 및 위탁가정의 실태

○ 보건복지부의 통계연보와 내부자료에 따르면, 요보호 아동은 1999년 7,693명, 2000년 7,760명이던 것에서 2001년을 기점으로 1만여 명을 넘어서 2001년 12,086명, 2002년 10,057명, 2003년에는 10,222명이 발생함.

○ 요보호 아동수는 1997년 경제위기 전까지는 감소추세였으나, 그 이후 증가하였고, 2001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 1,000명 이상이 증가함. 2003년 미혼모의 아동인 경우가 43.6%, 빈곤 및 부모의 실직에 의한 경우가 42.4%를 차지하고 있음.

○ 2002년의 경우 전체 요보호 아동 중 시설보호는 4,663명(46.4%), 입양 2,544명(25.3%), 위탁보호 2,177명(21.7%) 이었고, 2003년의 경우 전체 10,222명의 요보호 아동 가운데 4,747명이 시설 수용되었고, 3,851명은 입양(국내입양: 1,564명, 국외입양: 2,287명), 2,392명이 가정위탁 보호를 받았음.

○ 소년소녀 가장 세대는 6,184명으로 미취학 소년소녀 가장세대가 99명이나 되고 초등학교 재학 중인 소년소녀 가장세대도 2003년 한해 1,309명이었음.

○ 위탁보호는 18세 미만의 아동이 부모의 질병, 가출, 학대 등으로 인해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아동이 부모로부터 임시로 분리될 필요가 있을 때, 이루어지는 보호형태로 부모 이외의 의무부양자에 의한 대리양육가정, 부양의무자 이외의 친인척 위탁가정 및 일반인에 의한 가정위탁으로 구분 됨.

○ 2001년 현재 위탁보호 아동은 4,325명인데, 이중 1,170명(26.4%) 이 대리양육가정이고, 2,931명(66.2%)명이 친인척 위탁이며, 324명(7.3%)만이 일반위탁으로 일반위탁의 규모는 적음.

○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보호대상인 아동이 스스로를 보호해야 하는 것이 소년소녀가장 제도로 개선되어야 할 보호제도라고 지적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등으로 2000년 이후 소년소녀 가정 아동의 상당수를 대리보호 및 친인척 위탁가정으로 전환하면서 소년소녀 가정의 아동 수는 감소함.

○ 그러나 입양의 저조 및 가정위탁사업의 협력체계 미흡으로 요보호 아동의 보호조치에서 여전히 시설보호가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음.

○ 정부는 1997년부터 1999년까지 10세대를 선정하여 가정위탁의 한 유형으로 요보호 아동 5~6명과 보호자 1인으로 한 가구를 구성하여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정서적인 안정감과 사회적 적응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시범 그룹홈(공동생활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2003년 현재 32세대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정부는 시설보호 및 소년소녀 가장세대 등을 축소하고 그룹홈 보호를 계속 확대할 방침임.

나) 위탁가정 아동의 인권 실태

○ 대리 및 친인척 가정의 장기위탁보호가 대부분임에 따라 위탁부모의 연령은 60세 이상, 소득은 50~100만원, 교육은 무학,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위탁부모에 의한 보호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가정위탁제도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일반 위탁부모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

지 못함.

○ 위탁부모의 학대위험에 처한 위탁아동사례도 보고된 바 있음. 조선일보 2004년 1월 28일자 기사에서 400여 만원의 카드빚을 지고 있는 부부가 어린이를 위탁받아 양육하면 매달 수십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용, 2003년 12월 15일 부산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두 아이를 데려온 뒤 한 달여간 수시로 구타하고 굶기는 등 학대한 부부가 경찰에 의해 구속된 사건도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위탁가정의 부모들은 위탁아동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위탁아동의 교육적 요구나 필요가 발생해도, 위탁아동이 건강상의 치명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돼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함. 위탁가정은 교육비와 의료비의 문제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고 있는데, 위탁아동을 양육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위탁가정 양육지원비는 일반위탁가정의 발걸음을 어렵게 하는 주요요인이 되고 있음.

○ 이외에도 위탁부모들이 위탁아동과의 관계 및 책임과 의무, 권한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어 위탁아동이 위험에 처하게 되었을 때 책임소재가 불분명 함.

2) 위탁가정 등 대안가정에 대한 정부 정책

○ 아동복지법 제10조(보호조치) 18세미만의 아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부모 제외)와 동거하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10조제1항 제2호의 대리양육가정으로 선정하고, 부양의무자가 아닌 친·인척과 동거하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10조 제1항 제3호의 가정위탁으로 선정함.

○ 대리양육가정 및 위탁가정에 대한 정부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조 제3항, 제5조 제3항, 제7조, 제10조 및 동 법 시행령 제5조 등의 생계 및 교육보호 관련조항에 따라 생계급여 월 28만원 내외를 지급하고 있고, 가정위탁아동의 국민기초생활대상자 책정 및 보육료 지원도 시행되고 있음.

○ 대리양육 가정 및 위탁가정에는 가정의 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에 관계없이 2000년부터 아동 1인당 월 6만 5천 원씩을 지급해 왔으며, 2004년부터는 위탁가정에 양육비 지원액을 월 7만원으로 인상함. 의료급여법 제3조(수급권자)규정에 따라 의료급여 등의 지원하고 있는데, 이 모든 지원내용은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만 해당됨.

○ 가정위탁사업의 홍보, 위탁가정을 발굴하고, 가정위탁아동 지원을 강화하고, 교육 및 사후관리 등을 통해 가정위탁사업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2003년 전국에 17개소의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설치하였고, 2004년 7월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를 위탁, 지정함. 중앙가정위탁 지원센터는 각 지역의 가정위탁지원센터들 간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가정위탁의 활성화를 위해 위탁가정의 발걸음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게 됨.

○ 정부는 2004년 그룹홈을 시설의 종류에 포함시키고 그룹홈 사업을 확대하는 계획을 내놓고 있으나, 2004년 그룹홈에 대한 정부의 예산은 2억 1500만원으로 2003년 2억 500만원보다 1천만 원 증가한 것에 불과 함. 그룹홈은 2004년 현재 2003년도와 같은 32개소로 정부의 그룹홈 사업의 확대계획이 실행에 옮겨지고 있지 않음.

○ 우리나라 가정위탁보호사업은 현재 가정위탁보호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동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등에 명시된 아동위탁관련 조항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나 실제로는 아동복지사업지침에서 제시하는 가정위탁관련 조항에 적용을 받고 있는 실정임. 가정위탁제도를 활성화하고 있지만 이를 제도적, 법적으로 뒷받침해 줄 만한 위탁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음.

- 이러한 법적 근거의 부재는 위탁가정 사업의 활성화를 어렵게 하면서 동시에 만일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위탁아동이 사망이나 상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위탁아동에 대한 양육권 및 법적 부모 등의 권리를 누구에게 줄 건지도 명시되어 있지 않아 책임소재가 분명치 않음.
- 아동복지사업지침의 위탁가정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내용이 요보호 아동의 필요에 맞는 현실성과 구체성을 담아내고 있지 못해 아직도 정책집행의 융통성이 많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양육비 지원, 교육비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고 위탁가정 부모들에게 위탁아동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음.

3)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

대안 양육

40. 위원회는 가정과 분리된 아동의 시설양육에 대한 대안으로 그룹홈을 설립한 데 주목한다. 그러나, 그룹홈의 설립과 대안 양육 체계의 개발이 여전히 제한적이며, 사적 양육 기관이 정부의 규제나 정기적인 감사를 받고 있지 않음을 우려한다.
41. 위원회는 한국정부에 권고한다.
 - a) 그룹홈과 대안양육체계의 숫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라. 특히 위탁가정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카운슬링과 지원체계를 강화하라.
 - b) 모든 공적·사적 시설에 입소한 아동에 대한 정기적인 감사를 보장하라. 이는 아동의 견해와 아동 최상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며, 가능한 한 시설입소아동을 가정환경 속에 재통합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
 - c) 대안양육상태와 취약한 가정 속의 아동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사업가의 숫자를 늘리고 그들의 기술과 능력을 향상시켜라.

4) 주요 외국의 관련 제도

- 영국에서는 지방정부가 위탁아동에 대한 양육권을 갖고 사망 등과 같은 사건 발생시 시나 구청장이 책임짐. 위탁아동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정부가 짐. 가정위탁기준(National Foster Care Standard)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를 실시하고 있음. 아동이 위탁되면 양육권 및 법적 부모 친권을 지방정부가 보유하게 되면서 아동의 사고, 사망, 질병, 교육 등에 대한 문제는 지방정부의 책임이며,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감시하고 협력하면서 지방정부와 위탁아동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 지난 2002년 수양 및 입양에 관한 절차 등을 담은 '수양·입양 표준화법'이 제정됨.
- 사건이 발생한 지 1주일 내에 모든 아동은 위탁가정으로 배치됨. 사회복지사는 아동이 배치된 후 일주일 내에 위탁가정을 방문하고, 위탁부모를 제외하고 아동을 대상으로 위탁가정의 생활을 평가함. 배치 후 1개월 내에 사회복지사는 다시 위탁가정을 방문하여 배치결정이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따른 것인지를 평가함. 이후 6개월 내에 위탁가정의 적합성을 다시 평가하고 이 가정이 아동을 위해 최선의 환경이 되는 지를 탐색함. 이러한 평가 결과들을 6개월 내에 정부에 보고하는데, 이 보고서에는 위탁부모, 친부모, 위탁아동의 의견을 반드시 첨부해야 함. 위탁계약서에는 수양부모의 권리, 친부모의 권리 등을 명시함.
- 모든 위탁부모는 지역정부의 공인을 받은 사람들임. 사립 위탁기관들이 있는데 그것들도 모두 정부에 공인된 기관들임. 위탁가정에 아동이 배치된 후 공무원들은 사후관리에 대해 책임을 짐.

- 최근에 서구에서 가정위탁과 관련된 최대의 이슈는 치료적 가정위탁(therapeutic foster care)으로 알코올중독, 행동장애 등 다양한 문제가 있는 아동을 특수한 교육을 받은 위탁가정에서 보호하는 제도를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 위탁부모 인증제를 실시함.

5) 위탁가정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

- 가정위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함.
 - 가정위탁보호를 관장할 수 있는 직접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대응하는 실천정책을 제안할 수 있어야 함. 아울러 위탁은 일시보호이며 위탁아동의 원가정으로의 복귀가 위탁사업의 최대목표임을 관련규정에 명시함.
- 각 위탁부모, 친부모, 지방정부, 담당기관 등에 위탁아동에 대한 양육권, 부모친권, 위탁아동에 대한 의무와 책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어야 함.
 - 위탁부모가 아동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불의의 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하는 아동 등에 대비한 법적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명시해야 함. 서구의 경우처럼 아동위탁과 동시에 양육권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귀속시키고 사고의 책임도 지게 하는 방향으로 법제화 할 수 있을 것임.
- 위탁가정 선정과 관련한 실행기준의 보완, 위탁가정의 인증제 실시
 - 나이와 가족구성, 그리고 부동산 소유 등의 규정으로 제한되어 있는 현행 가정위탁부모의 자격요건은 위탁가정을 발굴하는데 제한을 가져오는 요건이 됨.
 - 따라서 이러한 규정을 완화하는 가정위탁 발굴지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위탁가정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현행 위탁가정에 대한 교육을 자율적 참여에 맡기지 말고 필요한 교육시간을 의무로 규정해야 함.
- 위탁가정에 대한 양육지원비의 현실화 및 아동의 특성에 따라 양육지원비를 차등 지급해야 함.
 - 위탁아동 한 사람당 월 7만원이 지급되는 현행 위탁가정 지원내용은 아동의 생존, 발달, 보호, 교육에 필요한 적절한 지원을 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액수로 볼 수 있음.
 - 서구의 경우처럼 양육지원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으며, 양육지원비의 책정은 한 아동당 필요한 최소액을 정하고 아동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위탁아동별로 차등 지급되는 방안을 개발해야 함.
- 의료급여의 확대
 - 위탁아동에 대한 의료비를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함. 이로써 위탁아동이 의료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 위탁부모가 치료유형에 상관없이 아동에 대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위탁가정에 대한 위탁휴가 제도 도입
 - 위탁가정 부모들의 휴가는 아동위탁을 위한 재충전을 위해 매우 필요한 조치임.
 - 선진국에서는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에도 입양휴가를 운영하고 있는데, 영국은 유급 26주 동안, 노르웨이는 유급으로 39주 동안, 덴마크는 유급으로 47주, 스웨덴은 양부모 모두 유급 6개월, 일본은 출산과 동일한 육아휴직, 미국은 유급 6주, 무급6주, 캐나다는 유급 6개월의 휴가를 받을 수 있음. 위탁부모 휴식제도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치료적 가정위탁의 활성화 방안 개발
 - 문제행동, 알코올중독, 행동장애 등 다양한 문제가 있는 아동을 시설보호가 아닌 가정

- 에서 위탁보호 할 수 있도록 이들을 위탁 보호하는 가정에 대한 지원책을 개발해야 함.
- 상담,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의 무상지원 뿐만 아니라 이들 아동의 특수한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모두 지역에서 지원 받는 체계를 개발해야 함.
- 사후평가의 구체화, 체계화
- 아동이 일단 위탁가정에 배치되고 나면, 사후관리 및 평가가 전혀 실행되고 있지 못하는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사후평가를 담당할 수 있는 위원회가 위탁부모 선정기관과 지방정부의 관련자를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함.
 - 아동을 위탁가정에 배치한 후 이들의 적응상황을 평가하고, 양육형태, 역량, 아동과의 적응 등을 배치 후 최소한 1주일, 1개월, 3개월, 6개월을 주기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함.
- 위탁 대상아동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
- 위탁아동에 대한 현행 규정은 '18세 미만의 아동, 시·군·구에서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사망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그 밖의 사유가 무엇인지가 불명확하여 위탁보호 대상아동을 평가하는데 위탁기관과 일선 행정기관의 의견이 차이가 있을 소지가 있음.
 - 위탁아동 선정기준의 일관성을 기하기 위해 위탁아동대상에 대한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각 해당항목에 대한 기준평가표가 마련되어야 함. 위탁보호 대상아동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표가 개발되어야 함.
- 위탁가정 발굴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
- 위탁가정을 개발하는데,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임을 세계수 양부모협회장의 경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아울러 위탁가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위탁가정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홍보활동은 위탁보호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인 일 임.

5. 아동/청소년의 권리 증진을 위한 과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은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평등하게 적용되고,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지향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글은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별로 주요 쟁점과 과제를 살펴보고, 아동권과 국가인권정책의 방향을 장을 달리하여 살펴보았는데, 이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아동 생존권의 주요 쟁점과 과제는 부모의 양육을 적절히 받지 못하는 아동의 생존권 보장이다. 아동은 출생과 함께 부모와 가족의 보호를 받으며 성장하는데, 부모의 미혼, 사망, 가출, 이혼, 빈곤 등으로 적절한 양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 매년 1만 명 가량 발생된다. 1997년 경제위기를 계기로 빈곤과 이혼으로 인한 요보호아동이 증가되고 있다. 한국은 발생된 요보호아동을

주로 입양 혹은 시설보호를 하였는데, 향후에는 국외입양을 줄이고 국내입양을 대폭 늘리며, 가정위탁이나 소규모시설에서의 보호를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부모의 이혼으로 양육위기에 빠진 이혼가정/한부모가정의 아동의 생존권도 시급한 문제이다. 부모의 이혼 시에 자녀의 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혼 후에 양육의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사법적 조치가 약한 점을 시급히 개선하여 이혼가정의 아동도 경제적 보장을 받으며 자녀로서 부모 면접교섭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아울러, 소외계층 아동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고, 아동의 영양과 건강권을 확보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이다.

아동 보호권의 주요 쟁점과 과제는 아동학대 예방과 체계적 서비스 제공, 불의의 사고의 예방과 안전 조치 강화, 아동의 문제행동 예방과 보호대책, 유해환경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의 보호대책, 아동보호를 위한 사법절차 개선 등이다.

한국 정부는 학대받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위기상황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만, 아직도 □□아이들은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한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서 아동학대는 감소되지 않고 있다. 학대받는 아동에 대한 위기개입은 상당히 정착되었지만, 학대받는 아동을 중장기적으로 보호하면서 후유증을 치료하고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적 개입으로 재학대를 감소시키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보행중인 아동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등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는 아동이 선진외국에 비교할 때 2~5배 가량 된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다. 학교주변에 자동차의 제한속도를 낮추고 보행자를 위한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등 안전사고의 예방 조치를 강화시켜야 한다.

또한, 아동의 문제행동 예방과 보호대책, 유해환경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의 보호대책, 아동보호를 위한 사법절차 개선이 절실하다. 아동은 미래의 주인공이면서 현재의 주역이기도 하다. 발달단계상 정체감의 위기를 겪기 쉬운 아동과 청소년이 문제행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방지할 뿐만 아니라, 아동과 청소년을 위협에 빠트리는 유해한 업소, 물품, 약물, 매체, 행위 등에 대한 규제도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 설사 아동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도 적절한 변호권의 확보 등 성인에 준하는 사법적 절차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소년사법

을 개선해야 한다.

아동 발달권의 주요 쟁점과 과제는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획기적 신장, 아동의 학습권을 학교와 사회에서 보장, 장애아동의 유형과 수준별 발달권 보장, 아동의 여가시간 확보와 문화향유권의 보장, 아동문제에 대한 체계적 상담과 실질적 지원 등이다.

최근 영유아의 교육과 보육의 수혜율은 크게 신장되어 가고, 초·중·고등학교의 취학률도 100~97%이기에 아동의 발달권은 잘 보장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학교교육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오전 7시 30분까지 등교하게 하는 0교시와 강제로 실시되는 야간자율학습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입시 위주의 교육은 아동의 학습권을 크게 훼손시키고 있다. 따라서 취학률과 같은 양적인 증가와 함께 학생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학교교육을 정착시켜야 한다.

또한,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가진 아동은 학교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받더라도 장애의 유형과 수준에 맞는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복지대책이 필요하다. 아동의 학습권과 함께 여가권을 조화롭게 보장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학생을 강제로 유치하는 시간을 줄이고, 여가시간을 늘리며 아동이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여가공간과 프로그램을 확충해야 한다. 아울러, 성장과정에서 성적, 진로, 성, 인간관계 등으로 고민하는 청소년에 대한 전문적 상담체계의 확충이 필요하다.

아동 참여권의 주요 쟁점과 과제는 학교운영에 학생 참여의 제도화, 사회생활에서 아동의 참여권 신장, 아동의 참여권에 대한 성인의 인식 제고 등이다. 아동의 생존권, 보호받을 권리, 그리고 발달권은 어느 정도 신장되었지만, 아동의 참여권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는 아동의 의사를 묻지 않고도 부모나 교사 그리고 성인이 아동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다는 잘못된 편견 때문이다.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학교운영에서 학생의 참여를 제도화시켜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의 참여, 학교생활규정의 제정과 개정에서 학생의 참여 등이 중요한 지표이다.

사회생활에서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직 선거권의 하한 연

령을 20세에서 18세로 개정하고, 삶의 모든 분야에서 아동의 의사표명권과 의사결정권을 존중하는 생활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아동권과 관련된 국가인권정책을 적절히 수립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법과 행정을 통해서 제도화시켜야 한다. 특히, 아동권 보장을 위한 적절한 행정절차를 수립하고, 필요한 재정을 확충해야 한다.

또한, 아동권 보장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민법, 아동복지법, 초중등교육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 즉, 미성년자인 자를 부모의 부속물로 인식하는 민법의 각종 조항을 개정하고, 교장에 의한 학생의 체벌을 합법화시킨 초중등교육법 등을 아동권리협약의 정신과 내용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 나아가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아동권리기본법을 제정하고, 각 자치단체에서 아동권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으로 취약한 아동권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아동과 교사 등 관계자에게 아동권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아동권 보장을 위한 국가와 민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글에서 논의된 아동권의 주요 쟁점뿐만 아니라, 아동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신장시킬 수 있는 제반의 정책이 한국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실천적인 노력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구현되길 촉구한다. 또한 아동의 권리를 사회복지사, 교사, 보건의료종사자 등 관련 전문가와 부모 등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며, 아동의 권리상황을 점검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실천하기 바란다.

아동과 청소년을 포함하여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가 살기 좋은 사회는 모든 사람들이 살기에 행복한 사회이다. 뿌리깊은 연령차별, 성차별, 인종차별의 장벽을 넘어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존중받으며 살 수 있는 세상은 바로 복지사회이다.

아동의 권리라는 관점에서 한국의 관련 국내법령/정책에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몇 가지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아동복지법]

- 학대받은 아동을 보호할 때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양육시설, 시군구청 등이 어떻게 법적 권한을 분담할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필요하다. 현재는 학대받은 아동을 아동보호전

문기관이 접수하여 시군구청을 통해서 아동양육시설에 입소시켰는데, 친권자인 부모가 아동을 양육하길 원할 경우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법적으로 개입하기 어렵다.

- 재학대 사례 혹은 재학대가 우려되는 경우에 친권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규정할 것인지를 법제화시켜야 한다. 성학대의 경우 가해자가 가까운 친인척인 경우가 많은데, 법 대책 없이 다시 가정으로 복귀시키는 경우가 많다. 친권을 박탈시키는 제도가 있지만, 매우 번거러워 별 실효성이 없다.

- 부모가 있는 아동이 아동양육시설에서 살 때 부모와 시설장간의 법적 권한을 적절히 규정해야 한다. 현재는 부모의 친권이 절대적이다.

- 가정위탁지원사업에서 위탁부모의 법적 권한을 제도화해야 한다. 또한 위탁가정에 대한 재정적 지원도 다른 서비스(예, 시설보호)와 균형있는 수준으로 해야 한다.

- 장기적으로 국외 입양을 금지하고 국내입양을 촉진시키는 법으로 '입양법'을 고쳐야 한다. 특히 4대 입양기관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늘려서 입양기관이 국외입양을 줄이고도 기관운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국내외에 입양이 되어 성장한 입양인에 대한 법적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 학교에서 학교장에 의한 체벌을 허용하는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 초중등교육법령과 각종 학교의 학칙/규정 등에서 학생의 권리를 박탈하거나 억압하는 모든 법령과 규칙 등에 대해서 체계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 아동권리협약의 내용과 정신에 맞게 교사, 교직원, 그리고 학교운영자에게 인권교육을 정례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법제화해야 한다.

- 초중등교육법에 학생회를 법적 기구로 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 어린 부모(혹은 미혼모)가 임신 중이나 산후에 다닐 수 있는 특성화중/고등학교를 설립하거나, 현재 미혼모보호시설을 대안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어린 부모의 학업중단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민법]

- 부부의 이혼 시에 15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자녀에게 어느 쪽 부모와 함께 살 것인지에 대한 의견표명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 부부가 이혼 시에 자녀의 양육권과 양육비의 분담에 대해서 명확하게 법적으로 지정해야 한다.

- 이혼 후에 부모가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매우 손쉽게 양육비가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간소화시켜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국가가 양육비를 징수할 수 있게 한다.

- 친양자 제도의 경우에 부모가 재혼 후 또 다시 이혼을 할 경우에 [비혈족인 아버지의 성]을 쓰는 자녀의 인권이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재혼이 반복될 경우에 자녀는 일생동안 여러 차례 성을 바꾸어서 정체성에 혼란을 가질 수도 있다.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 부모의 사망, 이혼 후에 미성년인 자녀가 재산을 가진 경우에 재산권 행사를 보다 신중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예컨대 미성년자인 자녀가 큰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한쪽부모와 의붓부모가 아동의 복리와 반하여 사용(혹은 처분)할 수도 있을 것이다.

[기타 법률]

- 소년법을 개정하여 우범소년을 사법적 절차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을 금지시켜야 한다(이는 국민의 평등권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가벼운 처벌을 받을 만한 촉법소년과 범죤소년에 대한 법적 처리를 대폭 간소화시켜서 '보호라는 명분으로 이루어지는' 구금기간을 최대한 단축시켜야 한다. 범죤소년의 대부분이 보호처분 등으로 가정으로 복귀되는데도 '소년분류심사원' 등에서 체류하는 기간이 너무 길어서 학교의 중퇴 등이 이루어지기 쉽다.
-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19세 이상에게 선거권 뿐만 아니라 피선거권도 부여해야 한다.
- 근로기준법에서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법규 위반도 강력히 처벌하게 하여, 아동/청소년의 아르바이트에 대한 상습적인 근로기준법 위반을 보다 강력히 처리해야 한다.

참 고 문 헌

- 강인수(1986). 학생 부모의 교육권에 관한 연구. 서울: 고려대학교 박사학위청구 논문.
- 국가인권위원회(2002). 아동·청소년 인권침해법령 조사연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2004). 아동인권정책 기본계획수립방안.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길은배·이용교·김영지(2001). 청소년인권지표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서울: 문화관광부·한국청소년개발원.
- 김성재 외(2002). 인권시대를 향하여. 서울: 나남출판사.
- 김승권 외(2003).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복지증진방안 연구. 서울: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영지·김세진(2004). 외국의 청소년인권정책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은숙 외(2004).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방안 연구. 서울: 보건복지부·어린이보호재단.
- 김정래(2000). "아동권리협약의 정신과 그 방전적 이행을 위한 한 논의". 아동권리연구4(1). 한국아동권리학회.
- 문화관광부·한국청소년개발원(1999). 청소년이 알아야할 인권이야기. 서울: 문화관광부·한국청소년개발원.
- 미국아동복지시설연맹 편, 차인홍·송경옥 역(2004). 아동복지시설 서비스 기준. 서울: 은평천사원출판부.
- 박향아(2002). "아동의 권리에 관한 합의 유형화와 아동을 위한 내용의 재구성". 교육이론과 실천 Vol. 12 No 2. 창원: 경남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 백우정(1993). 아동권리발전과정에 관한 연구. 창원: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변용찬 외(1998).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법·제도적 조치: 아동권리조약에 관한 2차 국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기초연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변재관 외(2002). 2001년 사회복지시설 평가·양로,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부.
- 서문희·안현애·이삼식(2002). 아동권리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서울: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설정곤(2005). "한국의 아동정책과 전달체계". 아동권리교육과정Ⅱ. 서울: 보건복지부·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오선영(2005).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해”. 아동권리교육과정Ⅱ. 서울: 보건복지부·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윤덕경·장경아(2002). 가족법상 친권·양육권·면접교섭권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 연구.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이영숙·이종원(1994). 1994 한국의 청소년지표.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용교(2005). 디지털 사회복지개론. 서울: 인간과복지.
- 이용교(2004). 청소년인권과 인권교육. 서울: 인간과복지.
- 이용교 외(2005). 한국의 아동청소년권리. 서울: 인간과복지.
- 이재연(2005). “한국의 아동권리현황과 문제분석”. 아동권리교육과정Ⅱ. 서울: 보건복지부·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이종원·황진구·이혜연(1997). 1997 한국의 청소년지표.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태수(2000). 우리나라 아동보호의 실태 및 보호양식 개발에 관한 연구. 서울: 아이들과 미래.
- 이태수·함철호·이용교(1997). “소규모 아동복지시설의 운영실태와 활성화방안”. 한국아동복지학 제5호. 서울: 한국아동복지학회.
- 조홍식(2000). “아동권리지표에 따른 ‘아동최선의 이익’ 정책이행 분석”. 한국사회과학 Vol 22 No 3. 서울: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짐아이프, 김형식·여지영 역(2001). 인권과 사회복지실천. 서울: 인간과복지.
- 최윤진(2000). “아동의 권리와 청소년의 권리”. 청소년학연구-7(2). 서울: 한국청소년학회.
- 최현미(1998). “아동복지시설의 전문화 방안-미국아동복지협회의 기준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2집. 평택: 평택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아동복지시설연합회(1999).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에 관한 공청회 자료집.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아동복지시설연합회.
- 한국아동권리학회 아동지표개발팀(1999). “한국의 아동권리지표개발 연구”. 아동권리연구-3(1). 서울: 한국아동권리학회.
- 子どもの權利條約總合研究所(2002). 川崎發子どもの權利條例. エイデル研究所.
- 子どもの權利條約ネットワーク編(2001). 學習, 子どもの權利條約. 日本評論社.
- 高橋重宏(2000). 子どもの權利擁護. 中央法規出版.
- Council of Europe(1996). The rights of the child: A European perspective. Council of Europe.
- Davidson, S.(1993). Human Rights. Milton Keynes: Open University Press.
- United Nations(2001). CRC-General Comment No.1-The Aims of Education. United Nations.
- (2002). CRC-General Comment No.2-The Role of Independent National Human Rights of the Child. United Nations.
- (2002). CRC-General Comment No.4-Adolescent health and development in the context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ited Nations.

관련 사이트

* 정부기관

경찰청 <http://www.police.go.kr>
교육인적자원부 <http://www.moe.go.kr>
국가인권위원회 <http://www.humanrights.go.kr>
문화관광부 <http://www.mct.go.kr>
법무부 <http://www.moj.go.kr>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서울특별시립아동상담소 <http://www.child.seoul.kr>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청소년보호위원회 <http://www.youth.go.kr>

* 비정부기구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http://www.minbyun.jinbo.net>
월드비전 <http://www.worldvision.or.kr>
유네스코한국위원회 <http://www.unesco.or.kr>
유니세프한국위원회 <http://www.unicef.or.kr>
인권운동사랑방 <http://www.sarangbang.or.kr>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http://www.welfare.pspd.org>
청소년폭력예방재단 <http://www.jikim.net>
한국복지교육원 <http://www.okwelfare.net>
한국복지재단 <http://www.kwf.or.kr>
한국성폭력상담소 <http://www.sisters.or.kr>
한국어린이보호재단 <http://www.ilovechild.or.kr>
한국여성의전화연합 <http://www.hotline.or.kr>
한국이웃사랑회 <http://www.yes4good.org>
한국인권재단 <http://www.humanrights.or.kr>
한국청소년개발원 <http://www.youthnet.re.kr>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http://www.koreayouth.net>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Http://www.jikimi.or.kr](http://www.jikimi.or.kr)
UN 청소년과 홈페이지 www.un.org/esa/socdev/nyin

이용교는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로 일하면서 한국복지교육원을 창설하고 <http://www.okwelfare.net>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 <http://cafe.daum.net/ewelfare> 를 운영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디지털 사회복지개론, 디지털 청소년복지론, 디지털 복지시대 등이 있고, 청소년인권과 인권교육 등 인권 관련 저서가 다수 있다. 연락처는 010-4610-2458, lyg29@hanmail.net 이다.

저소득층아동 인권실태와 추진과제

(가정위탁에 있어서 아동 인권의 중요성에 대하여)

유 길 원(광주광역시가정위탁지원센터 소장)

우리나라에서 아동에 대한 관심은 극단적으로 이원화 되고 있다. 저출산 현상으로 인한 중산층 가정에서의 과대보호(소황제병)가 한편에선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친부모의 보호를 적절히 받을 수 없는 아동들이 물리적 학대나 동반자살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아동인권 유린 환경에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사회적으로 방치되기 쉬운 환경에 놓인 아동들을 어떻게 보호, 관리하는 것이 최선인가에 관한 논의가 사회적으로 확산되지 않고 아동활동가 중심으로 이야기 되고 있는 수준인것 같아서 유감이다.

오늘의 이 논의가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들도 한 인격체로서 기본 권리가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그들의 기본적 인권을 어떻게 보장하고 사회적으로 체계화 할 것인가 하는데 있어서 가정위탁이 하나의 중요한 방안으로 논의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1. 가정위탁의 중요성

전 세계적으로 가정위탁은 방치될 수밖에 없는 아동에 대한 대안적 가정활동(alternative care)으로 간주되고 있다. 친부모와 친자녀로 구성된 가정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바람직한 가정일 것이다. 하지만 최근 가족의 범주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고 각종 사회적 변화에 따라 반드시 친부모와 친자녀로 구성된 가족만을 가족단위로 이야기 하진 않는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대가족(확대가족)의 틀 안에서 친지보호(Kinship Care)가 관행으로 자리 잡았었고, 이것은 다른 나라 특히 아직 가정위탁이 공론화 되지 않은 국가들에서도 주된 흐름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친지위

탁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만 그럴 수조차 없는 아동들의 경우엔 다른 대안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친지위탁을 포함하여 일반 가정위탁의 필요성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살펴 우리 사회에 적합한 가정위탁 활동 사례를 통해서 보다 포괄적인 한국형 가정위탁의 모형이 개발된다면, 가정위탁이 대안적인 가정문화 운동으로 확산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가정위탁에 대한 사회문화적 거부감은 아직도 상당하다. 호주제가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뿌리에 대한 강한 집착 그리고 사회적 지원체계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가정위탁은 곧 입양으로 오해되고 있고, 나 먹고 살기 힘든데 남의 아이까지 왜 데려다 힘들게 하느냐는 자기 가정중심주의로 인하여 가정위탁은 그 개념조차 홍보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더구나 급속하게 추진된 도시화와 아파트 생활로 인하여 한 아파트 내에서 이질적인 여러 구성원이 더불어 살아야 하는 어려움은 매우 크다. 이로 인한 문제는 충분히 예측할 만하나 동시에 극복해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친부모와 함께 살 수 없는 아동들을 이 사회가 어떻게 보호하고 배려하는 것이 좋을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

우리사회가 급속한 변화와 발전을 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아동들은 친부모의 보호아래서만 그 생활이 가능한 것으로 당연시 하여 왔다. 그 결과 한국전쟁 중 부모를 잃은 수많은 고아들 그리고 그 이후 방치된 아동들이 해외 입양으로 이어졌고 동시에 많은 어린이들이 대규모의 아동복지시설인 양육시설(고아원)에 맡겨졌다. 아직까지도 큰 규모의 아동양육시설은 방치된 아동들을 보호하는 가장 대표적인 아동복지시설로 인지되고 있고 예산도 가장 많이 소요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대규모 아동보호시설이 갖는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한 방향으로 대규모 아동보호시설을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이나 가정위탁으로 대체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는 여전히 방치아동들에 대한 보호 관리를 주류 정책으로 삼아 왔었던 것이 사실이다. 가정위탁이 방치 아동에 대한 완벽한 대안이라고 감히 말할 수는 없으나 위탁부모들에 대한 교육이나 가정위탁지원센터 스태프들의 철저한 교육과 사후관리를 한다면 적어도 가정위탁이 대규모 아동시설에서의 관리나 공동생활가정(그룹홈)보다는 가정친화적인 바람직한 아동보호정책이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가정위탁은 친부모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들의 인권을 최선으로 하는 공동의 노력이라고 본다면 모든 정책과 가정위탁 운영과정이 아동 우선주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아동복지서비스 대상과 분류

아동복지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모든 아동과 그 아동이 속해 있는 가정이다. 이를 사회복지의 대상 분류기준인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원칙을 적용할 경우, 우선적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요보호아동과 그렇지 않은 일반아동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아동복지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에 따라 재가서비스와 가정 외 서비스로 분류되고, 서비스 수행 기능에 따라 지지적(1차방어선), 보충적(2차방어선), 대리적(3차방어선) 서비스로 분류한다.

1) 요보호아동 분류(장인협과 오정수, 2001)

양육환경상 보호가 필요한 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의 구조와 기능이 결손되어 건강한 양육환경하에서 성장하기 힘든 경우• 빈곤가정아동, 결손가정아동, 부모부재아동, 위기가정의 아동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으로 문제나 장애를 가진 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이 가진 독특한 심신상의 결함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참여에 제한을 받고 있고,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존엄성을 침해 받는 경우• 신체장애아동, 정신장애아동, 정서장애아동
사회적, 법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출아동, 비행아동
특별 보호를 요하는 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대 및 유기된 아동, 미혼모의 아동

2) 아동복지서비스 대상 분류(Kadushin, 1988)

부모역할이 없는 경우	• 부모 사망, 별거, 이혼, 신체적·정신적 질환, 투옥, 비합법성 이민
부모의 역할 거부	• 태만, 자포자기, 신체학대, 유기
부모의 무능력	• 신체적·정신적 또는 정서적 부적절성, 지식 또는 훈련의 결여, 정서적 미성숙(지체), 약물중독, 무지
아동의 무능력과 장애	• 간질, 정서적 결함, 정서적 혼란, 뇌손상
지역사회 자원의 결함	• 부적적할 주택, 실업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자에 따라 요보호아동을 분류하는 기준의 차이는 있으나, 공통적으로 장애나 문제를 가진 아동과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조건 및 환경속에 있는 아동이 요보호대상이 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국가, 사회, 가족 및 기관들은 아동복지의 기본전제가 되는 건전한 가정 환경, 보건, 교육, 종교, 노동, 오락, 특수보호등 각 분야에서 아동들의 권리나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최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3) 광주, 전남 아동결연서비스 대상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광주	전남
계	3,787	78,299
양육시설아동	693	1,485
시설장애아동	228	74
모자시설아동	23	88
소년소녀가정아동	60	1,521
가정위탁보호아동	346	1,002
저소득모자가정아동	1,143	12,000
기타저소득가정아동	1,294	62,129

출처 : 한국복지재단 광주·전남지부, 2006

3. 광주광역시가정위탁지원센터 현황

1) 센터현황

기관명	광주광역시가정위탁지원센터	소장	유길원
소재지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44-12, 한림빌딩 5층		
전화번호	062)351-1206	전송번호	062)351-2206
개소일	2003년 4월 29일	운영법인	한국복지재단
관련법규	아동복지법 제10조(보호조치)	구분	아동복지

2) 설립목적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아동의 부모가 일시적 또는 장기적으로 아동을 양육할 수 없거나 양육하기에 적절하지 못할 때,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건전한 가정에 단기 또는 중장기간 위탁양육함으로써 아동이 가정의 울타리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가정위탁보호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가정위탁은 입양과는 달리 친 가정이 정상화 되어 가족기능을 회복하게 되면 친 가정으로 복귀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함.

3) 연혁

- 1993. 4. 1 가정위탁보호사업 시범 실시
(한국복지재단 광주종합사회복지관)
- 2003. 4. 29 광주광역시가정위탁지원센터 개소
(보건복지부승인 광주광역시지정)
- 2005. 1. 1 센터 사무실 이전(서구 농성동 644-12, 한림빌딩 5층)
- 2005. 2. 일반위탁부모자조모임 '광주희망의등지' 결성(회장: 양혜숙)
- 2005. 1. 위탁부모 역량강화프로그램 실시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 2005. 9. 자문위원회 조직(위원장: 변귀연 호남대사회복지학과 교수)
- 2005. 12. 20 제1회 위탁가정 송년의 밤 실시
- 2006. 1. 위탁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친가정 가족기능회복프로그램 실시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4. 광주광역시 가정위탁보호 현황

1) 가정위탁 현황

(단위 : 세대, 명)

구분	합 계		일반위탁가정		대리양육가정		친인척위탁가정	
	세대수	아동수	세대수	아동수	세대수	아동수	세대수	아동수
누 계	258	347	54	66	133	185	71	96
신 규	136	191	30	37	70	102	36	52
종 결	62	83	4	5	23	31	35	47

2) 일반가정위탁 현황

구 분	신규		진행		종결		현재 진행	
	세대수	아동수	세대수	아동수	세대수	아동수	세대수	아동수
2006년	30	37	28	34	4	5	54	66
2005년	15	18	18	22	5	6	28	34
2004년	11	12	11	15	4	5	18	22

3) 위탁아동 연령별 및 성별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1-3세 (영아)	4-7세 (유아)	8-10세 (초등학생)	11-13세 (초등학생)	14-16세 (중학생)	17-19세 (고등학생)
계	347	10	30	54	103	99	51
남	191	7	18	32	59	47	28
여	156	3	12	22	44	52	23

4) 가정위탁 사유 현황

(단위: 명)

계	부모 사망	부모가출/ 행방불명	부모 질병	부모 수감	이혼	부모실직 빈곤	학대 방임	미혼모
347	99	95	14	5	104	17	6	7

5. 아동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가정위탁

선진국에서도 가정위탁이 법적인 장치로 제도화 된 것은 그리 오래 되지 않았다. 대부분 20-30년의 역사 속에서 제도가 정착되었고 특히 1990년대 상당수의 국가들이 가정위탁을 체계화하면서 법적, 사회적 지원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 그러면서 social worker 가 담당했던 가정위탁을 아동복지사(child welfare worker) 혹은 가정위탁활동가(foster care worker, foster carer) 등으로 명명하면서 아동복지영역에서 중요한 범주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같이 그 활동이 아직 미미한 단계에 있으면서 국가의 정책이 수립된 경우 적어도 다음 몇 가지 문제는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가정위탁은 일차적으로 아동권리협약 제20조의 정신을 철저히 수용하는 전제에서 모든 정책이 이루어지고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 최우선의 관점에서 친부모로부터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보호를 결핍한 아동은 그 누구라도 국가가 제공하는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고 이러한 보호나 지원은 법적 기반위에서 아동의 종교적, 문화적, 인종적, 언어적 차이를 인정하는 원칙하에서 대리기관이 정해져야 한다.

둘째, 가정위탁과 관련하여 일차 책임자(stakeholder)인 위탁부모와 위탁아동에 대한 관계에 보다 관심과 지원이 따라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분산되어 있는 위탁가정들이 공동의 노력과 상부상조를 할 수 있도록 가정위탁지원센터들은 배려해야 할 것이며 특히, 위탁부모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가정위탁의 영역과 위탁부모의 자세와 태도 및 가정운영 원칙 등에 대해 숙지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 위스콘신의 경우 위탁부모는 적어도 36시간의 부모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획득한 경우만 가정위탁활동을 할 수 있다. 또한 위탁가정의 적절한 규모와 경제활동 등을 고려하여 위탁가정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제반 규정들을 우리나라 상황에 맞도록 조정하여 보호아동이 위탁가정에서 또 한 번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최선의 정책수립과 지원을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이차적인 책임기관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사회복지사(상담원), 시도 담당 공무원 그리고 중앙부처(보건복지부)의 정책담당자등, 관련 책임자들의 교육과 체계적인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아동인권운동을 하는 시민단체들이 정부기관들과의 공동으로 가정위탁활동을 바람직한 보호아동 위탁활동으로 홍보되고 노력하는 네트워크를 마련하여 상호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우리 사회의 대안적인 가정문화운동으로 가정위탁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뿐 아니라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가정위탁 활동에 대한 문화적 거부감이 상당하다. 정치적, 사회적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이룩한 우리나라가 가정민주화 운동의 일환으로 가정위탁활동을 전개하여 아동 인권을 증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보건복지부가 가정위탁활동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지역에서도 선도적 역할을 해 나간다면 아동 인권운동의 한 획을 그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가정위탁에 대한 전문적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하고 가정위탁 지원센터가 그런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관계 인사들의 지원과 협력이 요청되며 지역사회 아동복지 관련 기관 단체 시설 등은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아동 인권을 위한 연대적 활동에 다 같이 힘써야 할 것이다.

시설아동의 인권실태와 추진과제

김 철 훈(목포우리집 원장)

1. 들어가는 말

아동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일차적인 과제는 그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일이다.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이와 같은 적극적인 인식은 대체로 금세기에 와서 이루어진 것이다. 20세기를 '아동의 세기'(Das Jahrhundert des Kindes)로 규정한 E. Key에 따르면, 아동은 적어도 6가지의 권리를 지닌다(유안진, 1995: 33-35). 여기에는 (1) 건강하게 출생할 권리, (2) 건강하게 자랄 권리, (3)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누릴 권리, (4) 교육을 받을 권리, (5) 정신적·도덕적 훈련을 받을 권리, (6) 놀이와 오락을 즐길 권리가 포함된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랜 세월동안 아동은 이러한 권리의 주체가 아니었다. 불평등한 사회에서 그들은 많은 경우 노동력을 제공하는 일꾼으로 또는 주인의 재산목록인 노예로서의 생활을 벗어나지 못했다(Osborn, 1981: 26-29).

앞선 세대보다 아동들이 더 많은 복지를 향유할 수 있는 오늘날 민주사회에서는 그 사정이 많이 좋아졌다지만, 아동복지의 현황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도 적지 않다. 예컨대 인간적 발달보다 오히려 경제적 이윤추구를 우선시하는 탁아소를 비롯한 아동양육 관련 산업(childcare industry)들에서 아동은 물체화(objectified)되고 있다(Suransky, 1982: 187)는 진단을 들 수 있다. 지난 20년 동안 미국의 모든 계층의 가정에서 아동과 부모의 상호작용이 오히려 감소되어 왔고 아동들은 더욱 무시당하고 있다(Summerville, 1982: 12)는 지적도 있다. 더욱이 아동에 대한 잇따른 성폭력 사건이 우리 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참여민주사회 시민연대가 정부에 '아동학대 방지법'의 제정을 촉구한 바 있다(매일신문, 1996. 7. 17). 이 사실은

우리나라의 아동복지가 현재 위기상황에 처해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뚜렷한 증거이다.

여기서는 아동복지의 견지에서 우리나라의 아동인권에 관한 발전과정과 광주·전남 지역의 생활시설아동의 현황과 권리 그리고 개선방안대에 말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겠다. 이를 위해서 아동복지권을 증진해온 우리나라에서 아동복지 확립을 위한 노력과 그 동향을 살펴 볼 것이다. 끝으로 생활시설아동의 실태를 중심으로 추진해야할 과제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II. 우리나라에서 아동복지 확립을 위한 노력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동존중이야말로 아동복지 활동에서 먼저 해결해야 할 사항이다. 한국의 전통사회에서 아동은 어떻게 취급되었는가? 여기에는 아동이 존중되어 왔다는 입장과 아동이 무시되어 왔다는 상반된 주장이 존재한다.

먼저 즉 아동이 무시되어 왔다는 부정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자.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유교사상이 지배한 사회였다. 유교 사회의 생활원리 및 아동교육의 근간이 된 것은 삼강오륜 특히 효 사상이었다. 효도를 중시한 가부장적인 유교의 전통 안에서는 자식이 아버지의 소유물이라는 사고가 뿌리 깊게 자리 잡았다. 가정에서 자녀는 부모에 예속된 존재였다(김선심, 함정인, 1992: 14). 이 경우에 어린이는 독자적인 인격체가 아니라 불완전하고 미숙한 존재로서 당연히 어른의 보호와 지도를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취급된다. 이러한 인식은 아동들의 놀이를 선비가 되기 위해 하는 공부를 훼손하는 비교육적이며 게으른 활동이라고 파악한 실학자 이덕무의 아동관([사소절] 동규편, 교습: 24)에서도 볼 수 있다. 그는 아동행동에서 경솔하고, 놀기 좋아하고, 물건을 탐내고, 어른을 속이는 부정적인 측면에 주목하고 있다(김태오, 1992: 189).

이러한 소극적인 아동 이해에 바탕을 둔 교육은, 이른바 '미래준비로서 교육관'에 대한 Dewey(1966: 54-56)의 비판에서 보듯이, 개별 아동의 현재적인 의미 있는 경험과 가능성을 무시한 채 최고의 외적 동기(상보다 특히 벌에)에 의존함으로써 몰인정하고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전락되고 만다. 장차 어른

으로서 갖춰야 할 자질을 쌓는다는 명분 아래 아동은 사회구성원의 후보생으로서 즐거움 없는 훈련으로 권태롭고 무의미한 아동을 보내게 된다.

아동을 삶의 과정에서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고 향유하는 시기로 인식하지 않고, 부모·사회·국가가 미래의 어른인 아동에게 대학입시라는 굴레를 씌우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훈련시키는 시기로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현재 누려야 할 즐거움과 관심을 간과하고 무시하는 경우도 있다(오미영, 정기원, 1994: 113).

이와 상반된 주장 즉 아동이 존중되어 왔다고 보는 긍정적인 시각도 물론 있다. 이러한 주장에서는 한국식 나이계산법과 태교사상을 증거로 들고 있다. 우리 선조들은 생명이 잉태되는 그 즉시부터 인격을 가진 존재로 인정했다. 서구에서 갓 태어난 영아는 0세이며 출생하여 1년이 지나야 비로소 1세가 된다. 이와 달리 우리는 태어난 아기에게 바로 1세라는 나이를 주고 첫돌이 지나면 2세라고 말한다. 태아기 동안을 연령에 가산하는 한국식 나이는 서구식 나이에 비해서 280여일(약 10개월)의 차이를 보인다. 이것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아동을 소중한 인격체로 존중해왔음을 말해 준다. 뿐만 아니라 태교를 중시하는 전통 또한 그 증거가 된다.

흔히 우리나라에서는 아동의 인격이 무시되어 왔다고 하지만, 태중교육을 받는 10개월을 출생 후의 10년 교육보다 더 중요시 여긴 사상은 현대의 아동 존중사상보다 오히려 선구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유안진, 1995: 20).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 아동양육과 복지를 위한 실천방향과 이념은 소파가 추진한 아동해방운동과 그 정신을 계승한 여러 형태의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각종 선언문이나 헌장을 통해 표출되었다. 1923년 5월 1일 제정된 어린이날 정신을 바탕으로 우리 정부는 1957년 '어린이 헌장'을 선포하고, 1975년 '어린이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였다. 그 뒤 새로운 아동상을 정립하고 아동의 복지이념을 추구하고자 1988년 어린이 헌장을 전면 개정하였다(주정일, 이소희, 1996: 18-19). 또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1989년 '청소년 헌장'을 선포한 바 있다.

역사적으로 아동은 성인중심의 우리의 전통사회구조 속에서 의무나 책임의 대상일 뿐 권리의 주체가 아니었다.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그

들을 사회의 중요한 성원으로 인정하게 된 것은 해방후의 일이다(김선심, 함정인, 1992: 14). 이는 국가의 교육 및 복지예산의 증액, 교육과 복지에 관한 각종 입법화 등과 진행방향을 같이 한다. 우리나라 아동 관련 법제활동과 공공행정의 추이를 공화국별로 고찰한 (초·중·고등교육을 포함하는 정규 학교 교육 부문을 제외한) 연구(이운상, 1992A)에 따르면, 그 동안 한국의 아동이 정책은 정치체제의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아왔다.

'교육법', '소년법', '근로기준법' 등을 비롯하여 불우 아동, 전쟁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초보적 규정들이 선을 보였다. 해방과 6.25동란이 초래한 극한상황에서 대부분의 아동관련 조치는 사회부장관의 행정지시를 중심으로 응급구호와 외원에 의존하였다. 11개월 동안의 제 2공화국 기간에도 같은 경향이 지속되었다.

제 3공화국 시기는 사회법령을 대량으로 입법한 시기였다. 여기에는 '고아 입양특례법', '생활보호법', '아동복지법', '미성년자 보호법', '학교보건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이 포함되었다. 비록 아동관련 시책이 부분적으로는 전시효과를 의도한 것이었다고 해도 필요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법적 행정적 기초를 수립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를 부여할 수 있다(같은 책: 22). 1972년 유신헌법이 제정됨으로써 탄생한 제 4공화국 시기에는 '모자보건법', '의료보호법', '소년원법', '특수교육진흥법' 등의 법령이 제정되었고, 불우 아동의 단체 및 개인 '결연사업'이 실시되었다.

복지사회의 구현을 사회목적으로 설정한 제 5공화국 시기는 경제생활의 안정과 더불어 사회복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때였다. 산업화와 도시화가 상당히 진전된 상황에서 변화된 가족구조와 생활 양식, 산업재해와 환경오염은 물론 아동 유기와 정서장애 아동문제, 아동·청소년의 비행과 이탈행위, 장애인과 노인문제 등 대처해야 할 과제가 많았다(같은 책: 27). 그 당시의 주요한 아동 정책으로는 '유아교육진흥계획'의 수립과 '학교급식법', '아동복지법', '유아교육진흥법', '청소년육성법', '어린이날'의 제정이 포함되었다.

6.29 민주화 선언과 88올림픽을 개최한 제 6공화국은 대내외적으로 커다란 일련의 정치적 변화를 거치는 가운데도 아동 관련 중요한 정책을 내놓았다. 이 가운데는 '모자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영유아보육법' 등의 제정과 '한국 청소년기본계획'의 수립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법령들과 정책의 내용에 대한

검토는 생략하고 다만 아동복지법에 관해서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아동복지를 위한 법제 활동에서 주목할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아동복지법을 만든 일이다. 우리나라는 일찍이 아동의 행복을 위해서 '아동복지법'(1961년)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요보호 아동'만을 대상으로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모든 아동'의 복지를 증진할 수 있는 적극적인 보호법으로 확대하기 위한 취지에서 '아동복지법'(1981년)으로 전면 개정되었다(신중섭 등, 1993: 431). 따라서 아동복지법을 만든 목적은 '아동이 건전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건강하게 육성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제 1조)에 있다. 여기서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제 2조 ①)를 가리킴으로써 일반적인 아동 이해와 차이가 있는데, 이는 어린이와 소년의 연령층 모두를 포함한 것이다. 이 법에서 보듯이, 모든 아동은 건전하게 육성될 권리를 지니며,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보호자, 국민, 국가, 지방단체는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제 3조). 특히 이 법은(제 4조)은 매년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법제화하고 있다. 어린이날의 법제화 조항은 현행 아동복지법(2000년 7월 13일 시행) 제 5조에 다음과 같이 제시되었다.

어린이에 대한 사랑과 보호의 정신을 높임으로써 이들을 옹고 아름답고 슬기로우며 씩씩하게 자라나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5월 5일을 어린이 날로 한다.

우리나라 아동의 권리상황을 앞으로 고찰할 국제법인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을 기준 삼아 비판적으로 검토한 한 논문(오미영, 정기원, 1994)에 따르면, 아동에 대한 정의의 혼란, 법적 지위의 제한적 인정, 의사표시권의 제한, 아동의 최선이익 최우선 원칙의 미비, 호주 승계 등에서의 차별, 요보호 아동의 권리보장의 미흡 등 앞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따라서 우선 법적 제도적인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아동복지에 있어서 그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아동을 둘러싼 어른들 즉 부모님과 선생님이 일상생활 속에서 그들의 권리를 참으로 존중해 주는 일이다.

아동을 어떤 이유로도 차별하지 않고,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 순위로 하며, 아동을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하여 아동의 보호받을 권리의 충족뿐 아니라 그들의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따른 의사존중의 확대를 아동에게 삶의 주인의식

을 느끼게 하는 것은 아동권리협약이 아니라 그와 매일 접촉하는 어른들인 것이다(같은 논문: 114).

국제적으로 1990년부터 발효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이 현재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틀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의 일부 조항을 유보하였지만 1991년에 비준하여 이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이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이 협약은 무차별의 원칙, 최선의 이익우선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며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 등 4가지 주요한 인권영역을 제시하고 있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당사국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5년마다 보고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1994년과 2000년에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의 국가보고서를 검토하여 1996년과 2003년 한국정부에 권고안을 채택하였다.

III. 광주·전남 지역의 생활시설아동의 실태 및 현황

우리사회에서 아동과 청소년은 기본적으로 가족의 지원을 통해 생존과 발달을 위한 보호를 제공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우리사회의 가족해체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전통적인 가족 형태로서 적절히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미 최근 몇 년 동안 연간 총 결혼쌍 대비 이혼쌍의 비율이 40%를 상회할 정도로 우리사회의 이혼률은 급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혼 상황에서 자녀인 아동과 청소년의 이익과 의사는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우선, 양육자의 지정과정에서 부부간의 협의에 의한 자주적 결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것이 원만치 않을 경우 법원의 개입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자녀의 의사는 거의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부부의 자주적 결정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법원의 개입 시에도 15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은 의견표명권이 인정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부모의 이혼 후 청소년의 면접교섭권이 배제되고 있다. 이혼 상황 자체에서도 자녀의 의사는 크게 존중받지 못하며 궁극적으로 이혼의 상황 속에서 '최선의 이익'이 손상된다.

이혼뿐만 아니라 미혼모 문제나 다양한 가족해체의 사유에 의해 원래의 가족에서 생활할 수 없는 경우 아동은 대리적 서비스를 받게 된다. 이 경우 아동은 입양 혹은 사회복지시설의 도움을 받게 되며 중간단계에서 위탁보호를 받기도 한다.

이에 대한 사회적 대처의 하나가 입양인데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의 입양 실태는 미미하다. 1999년 이후 연간 4,000명 이상의 아동이 입양되고 있으며 대략 40% 안팎의 아동이 국내입양, 그리고 60% 가량의 아동들이 국외입양되고 있다. 물론 과거 1970년대의 국내입양 비율이 24% 선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입양이 상당히 늘어난 것이지만 아직도 국외입양이 더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장애아동의 경우 2002년 기준으로 전체 843명 중 단 16명만이 국내에 입양되어 절대다수인 827명은 국외로 입양되었다.

아동복지시설 등을 통해서도 요보호 아동에게 사회복지서비스가 주어지고 있는데, 현재 공식적인 아동복지시설에만도 보건복지부 2006년 말 현재 집계 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18,817명 중 여기 광주·전남 지역의 생활시설아동의 수는 광주에 11개 시설에서 826명과 전남에서 23개 시설 1,557명으로 도합 2,283명의 아동이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은 요보호 생활자에게 주거와 식사를 제공하고, 교육훈련의 기회와 여가프로그램 등을 제공해 줌으로서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리도록 보장하고 있다. 아동생활시설의 경우 충분하지는 않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조금과 일반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비교적 어려움 없이 아이들에게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애쓰고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아동시설의 경우 심각한 인권침해사례는 일어나지 않으나 사회복지시설(조건부시설 또는 미인가시설)에서 운영자와 근무자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는 꾸준히 일어났고, 언론에 보도될 정도로 사회문제화된 경우도 적지 않다.

IV. 추진과제

가족해체나 다른 사유에 의한 입양 및 아동복지시설 이용의 경우 아동의 선택권이나 자율성이 관철되지 않으며 역시 '최선의 이익'이 도모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 또한 시설아동들의 대부분은 학교교육으로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생활을 함으로써 시설아동에 대한 인권이 사회와 학교 그리고 시설까지 통합적인 인권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며, 발달 과정에 따른 연령별로 식단이 짜여져야 할 것이며, 시설에서는 많은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또한 아동들의 선호나 의견은 무시되는 경향이 있어 아이들이 강제로 끌려 어쩔 수 없이 참여하기도 한다. 많은 아이들이 생활하다 보니 견학 및 프로그램을 위해 단체로 참여시 같이 하고 싶지 않으나 할 수 없이 단체로 하는 프로그램이라 함께 할 수밖에 없어 이 또한 아이들의 의사표현의 권리가 무시되고 있다.

이러한 시설 내에서의 아동들의 인권의 해결은 시설자체를 소규모화 하고 아동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모든 아동개개인에게까지 형평성 있게 인권이 보장되는 아동보호가 이루어 져야 될 것이다. 또한 시설생활아동들의 인권옹호를 완벽하게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의 인권문제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통계에 의하면 사회복지사 1호봉의 연봉(12,442,500원)은 노동부가 발표한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평균 연봉(20,610,000)의 60.4%밖에 미치지 않는 수준이고, 심지어 간호사협회 기준 간호사 1호봉 연봉(16,000,000원)보다 적으며, 종합병원의 간호사(20,442,000원)의 60.9%에 지나지 않으며, 교사의 연봉(20,102,500원)과도 비교하여도 61.9% 라고 보고하고 있다. 결국 사회복지사를 제외한 모든 영역의 전문직은 평균적 임금을 보장 받고 있는데 오직 사회복지분야만 자기 몫을 챙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사회복지사들의 근무여건의 개선과 후생복지가 이루어져야 하며, 사회복지사를 양성하는 대학에서도 인권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을 채택하여 전문적 교육을 시켜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시설아동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사회복지사가 사명감을 가지고 뚝수 있겠는가? 마지막으로 아동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박영균, "장애청소년 복지·문화의 현상 및 증진방안," 「장애인 고용」, 2001 여름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 서홍란, 이경아, 「사회복지 현장실습 핸드북」, 나눔의 집, 2000
- 이가옥 외, 「노인생활실태분석 및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
- 이용교, 인권에 대한 사회복지계의 접근: 성과와 과제, 2001
- 장인협, 최성재, 「노인복지학」, 서울대출판부, 1996
- 중앙사회복지연구회 역, 「사회복지사전」, 이론과 실천, 1995.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장애인 고용동향」, 2001년(2/4분기)
- 홍강의 이재연 조홍식 이양희 안동현 광영숙, 아동학대의 실태 및 후유증 연구, 보건복지부. 2000.
- 보건복지부, 「각 연도 생활보호사업 지침서(1990-1999)」
- 통계청, 각종 통계목록. 2000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보고」.2001
- 한국SOS어린이마을, 「대구지역 아동권리 인식개선 및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사업」 공동모금회 지원사업 2006

피학대아동의 인권 실태와 추진과제

김 은 영(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 소장)

1. 신고현황

1) 신고접수 및 결과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06년 한 해 동안 긴급전화 '1391'을 통하여 총 279건의 신고 전화를 접수하였다. 이중 아동학대의심사례는 210건(75.3%), 아동양육이나 자녀교육 등에 관한 일반상담은 65건(23.3%)이었으며, 타 센터로 의뢰한 사례는 4건(1.4%)으로 나타났다. 학대의심사례 210건에 대해 총 268건의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초기 개입결과 아동학대사례로 판정된 것은 총 186건이었다. 이 가운데 응급사례는 11건, 단순사례는 175건이었다. 현장조사 후 일반사례는 17건, 잠재위험사례는 7건이었다.

아동학대사례로 판정된 186건의 사례에 대해서는 신속한 개입과 함께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하였다. 전체상담 건수는 7,071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피해 아동에 대해서는 4,284건, 학대행위자에 대해서는 815건, 부모 및 가족상담 1,255건, 기타 상담이 717건이었다. 아동학대사례 한 케이스 당 평균 33회 상담을 실시한 것이다.

<표1-1> 신고접수 현황

년도	총계	학대의심 사례	일반 상담	타센터의뢰)	현장 조사	초기개입 현황					상담건수			
						계(%)		잠재 위험	일반 사례	피해 아동	학대 행위자	부모/가족	기타	
						응급	단순							
2004	222	135	87	·	280	135	6	109	1	19	1,634	659	810	795
2005	271	189	75	7	312	189	21	139	8	21	1,700	683	1,030	802
2006	279	210	65	4	268	210	11	175	7	17	4,284	815	1,255	717

9) 2005년부터 신설된 항목임.

2) 신고자 현황

신고자 총 210건 중 부모가 60건(28.6%)으로 가장 많았고, 이웃·친구에 의한 신고가 33건(15.7%), 친인척과 시설종사자 각각 25건(11.9%)순으로 나타났다. 아동 본인이 신고한 건수는 1건(0.5%) 이었다. 이는 아동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으며,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대상임을 알 수 있다. 아동들도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방법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06년 아동들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보육 및 교육기관 36개소에서 4,338명의 아동들에게 ‘야릇한 느낌(Funny Tummy Felling)’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시행 하였다.

아동복지법 제 26조에 규정되어 있는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 건수를 살펴 보면 복지관종사자가 25건(11.9%), 관련 공무원 14건(6.6%)으로 나타났으며, 시설 종사자 6건(2.9%), 의료인 6건(2.9%), 교사 3건(1.4%)순으로 나타났다. 2006년도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율은 25%로 예년에 비해 높은 신고율을 보였지만 지난 3년간 신고율도 평균 20% 초반에 머물고 있어 신고의무자에 대한 신고 비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보완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 표 1-2 > 신고자 유형 (단위: 수, %)

신고자 유형	신고수			
	2004년	2005년	2006년	
신고 의무자	복지관 종사자	13(9.6)	14(7.4)	25(11.9)
	교사	3(2.2)	15(7.9)	3(1.4)
	시설종사자	7(5.3)	2(1.1)	6(2.9)
	관련공무원	8(5.9)	5(2.7)	14(6.6)
	의료인	0(0.0)	1(0.5)	6(2.9)
소 계	31(23.0)	37(19.6)	54(25.7)	
비신고 의무자	부모	56(41.6)	56(29.6)	60(28.5)
	이웃·친구	20(14.8)	35(18.5)	33(15.7)
	친인척	8(5.9)	4(2.1)	25(11.9)
	경찰	7(5.2)	16(8.5)	11(5.2)
	본인	3(2.2)	6(3.2)	1(0.5)
	종교인	1(0.7)	2(1.1)	1(0.5)
	익명	·	28(14.8)	12(5.7)
	학원교사	·	1(0.5)	2(1.0)
	낯선사람	·	1(0.5)	5(2.4)
	기타	9(6.6)	3(1.6)	6(2.9)
소 계	104(77.0)	152(80.4)	156(74.3)	
전 체	135(100)	189(100)	210(100)	

2. 피해아동현황 및 조치결과

2006년 한 해 동안 현장조사 결과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된 186건을 중심으로 피해아동의 성별, 연령, 교육기관, 행동특성, 가족유형, 초기조치 결과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¹⁰⁾

1) 피해아동의 성별 및 연령

우선 피해아동의 성별에 있어서 남아가 97건(52.2%), 여아가 89건(47.8%)으로 남아가 여아보다 약간 많았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6-8세 아동이 학대 받은 사례건수가 49건(26.3%)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9-11세 47건(25.3%), 12-14세 43건(23.1%), 만 3-5세 21건(11.3%),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초등학교에 다니는 만 6-11세 아동이 전체 96건(51.6%)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바, 초등 연령의 아동들이 학대에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2-1> 피해아동의 성별 및 연령

특성	발생건수			
	2004	2005	2006	
성별	남	65(56.5)	86(53.8)	97(52.2)
	여	49(43.5)	74(46.3)	89(47.8)
	전체	115(100)	160(100)	186(100)
연령 (만)	1세미만	2(1.7)	4(2.5)	1(0.5)
	1-2세	9(7.8)	3(1.9)	6(3.2)
	3-5세	15(13.0)	12(7.6)	21(11.3)
	6-8세	23(20.0)	29(18.5)	49(26.3)
	9-11세	29(25.3)	48(30.6)	47(25.3)
	12-14세	26(22.6)	40(25.5)	43(23.1)
	15-17세	11(9.6)	21(13.4)	15(8.1)
	18세	.	.	4(2.2)
	전체	115(100)	157(100)	186(100)

10)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06년 한 해 동안 총 279건의 아동학대 사건을 접수받았다. 이 가운데 초기 접수 결과 아동학대사례는 210건이었으며, 현장조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아동학대 사례로 분류된 사례는 186건이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실제로 사례 개입이 진행된 186건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3) 피해아동의 특성

학대받은 아동의 신체적·행동적·성격 특성을 분석한 결과, 전체 21.9%인 62건의 아동이 거짓말, 반항, 도벽, 가출, 주의 산만, 과잉행동 등 비행이나 품행장애의 행동 특성들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 피해아동의 신체적·행동적·성격 특성 (단위: 건,%)

특 성		발생건수		
		2004	2005	2006
장 애	시 각	0	0	0
	청 각	0	0	0
	지체부자유	0	0	1(0.4)
	정신지체	1(0.4)	3(1.3)	1(0.4)
	자 폐	1(0.4)	0	0
	소 계	2(0.8)	3(1.3)	2(0.8)
행 동	거짓말	15(5.8)	13(5.7)	9(3.2)
	반 항	2(0.8)	4(1.7)	4(1.4)
	도 벽	13(5.0)	6(2.6)	13(4.6)
	가 출	17(6.5)	21(9.2)	13(4.6)
	약 물	0	0	1(0.4)
	흡 연	3(1.2)	3(1.3)	0
	음 주	2(0.8)	3(1.3)	0
	오락중독	0	4(1.7)	3(1.1)
	성	3(1.2)	2(0.9)	1(0.4)
	주의산만	9(3.5)	3(1.3)	12(4.2)
과잉행동	1(0.4)	1(0.4)	6(2.1)	
소 계	65(25.0)	60(26.2)	62(21.9)	
그 외 문제	신체발달지연	0	2(0.9)	2(0.7)
	정서문제	17(6.5)	32(14.0)	47(16.6)
	사회성문제	5(1.9)	3(1.3)	7(2.5)
	언어문제	4(1.5)	4(1.7)	9(3.2)
	학습문제	8(3.1)	13(5.7)	8(2.8)
	장기결석	5(1.9)	11(4.8)	13(4.6)
	학교부적응	10(3.8)	10(4.4)	14(4.9)
	특성없음	28(10.8)	28(12.2)	41(14.5)
	기타	49(18.8)	63(27.5)	78(27.6)
소 계	193(74.2)	166(72.5)	219(77.4)	
전 체	260(100.0)	229(100)	283(100)	

정서문제를 가진 아동이 47건(16.6%), '특성없음' 이 41건(14.5%)으로 다음 순으로 으로 많았으며, 학교부적응 14건(4.9%), 학습문제 8건(2.8%), 언어문제 9건(3.2%), 정신지체, 자폐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1건(0.4%)으로 각각 파악되었다.

4) 피해아동의 가족유형

학대받은 아동의 가족유형을 파악한 결과, 편부가정이 59건(31.7%),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가정이 56건(30.1%), 편모가정이 22건(11.8%), 재혼가정이 15건(8.1%)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편부모 가정에서 학대가 발생하는 건수가 총 81건으로 43.5%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표 2-3> 피해아동의 가족유형 (단위: 건,%)

가족유형	일반가정	편부가정	편모가정	재혼가정	친인척보호	동거(사실혼포함)	시설보호	기타	전체
2004	22 (19.1)	33 (28.7)	23 (20.0)	18 (15.7)	5 (4.3)	7 (6.1)	.	7 (6.1)	115 (100.0)
2005	44 (27.5)	41 (25.7)	14 (8.7)	16 (10.0)	8 (5.0)	5 (3.1)	24 (15.0)	8 (5.0)	160 (100)
2006	56 (30.1)	59 (31.7)	22 (11.8)	15 (8.1)	16 (8.6)	12 (6.5)	.	6 (3.2)	186 (100)

5) 피해아동에 대한 초기조치결과.

피해아동의 조치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186건 중 원가정보호 79건(42.5%), 가정으로부터 긴급 격리되어 보호(일시보호, 장기보호 포함)된 사례는 20건(10.8%), 지속관찰이 30건(16.1%)으로 나타났다.

<표 2-4> 피해아동의 초기 조치결과 (단위: 건,%)

	원가정보호	친인척보호	일시보호	장기보호	타기관의뢰	입원치료	지속관찰	상담	기타	전체
2004	62 (53.9)	6 (5.2)	2 (1.7)	11 (9.6)	3 (2.6)	7 (6.1)	10 (8.7)	10 (8.7)	7 (6.1)	115 (100.0)
2005	35 (21.9)	14 (8.8)	14 (8.8)	9 (5.6)	3 (1.9)	1 (0.6)	17 (10.6)	65 (40.6)	2 (1.2)	160 (100)
2006	79 (42.5)	25 (13.4)	18 (9.7)	2 (1.1)	1 (0.5)	3 (1.6)	30 (16.1)	16 (8.6)	12 (6.5)	186 (100)

결과적으로 볼 때 피해아동의 조치는 크게 원가정보호, 지속관찰, 상담을 포함하여 원가정보호 사례가 125건(67.2%), 일시보호, 장기보호, 친인척보호를 포함하여 격리 보호된 사례가 45건(24.2%)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는 아동학대 사업 초기에 비해 응급아동학대사태에 비해 단순아동학대 사례의 접수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을 반영한다. 아동학대 사업초기 신체학대가 많이 접수되다가 점차 방임형 사례가 증가되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방임 사례의 경우 아주 심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원가정 보호 후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원가정 보호된 사례는 재학대 방지를 위한 개입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학대 행위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감시 기능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격리 시 가장 고려해야 할 점은 아동의 안전과 가족보존에 관한 것이다. 아동이 가장 안전한 장소로 긴급히 분리되어야 하지만 사례 개입의 궁극적인 목적은 가정의 기능 회복 및 강화임을 인지하여 아동을 격리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학대자 현황 및 조치결과

1) 학대자의 성별 및 연령

학대행위자 성별 및 연령을 파악한 결과, 남자 131건(70.4%), 여자 5건(29.6%)으로 나타났다. 학대행위자의 연령은 40-49세가 69건(37.1%)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피해아동의 연령이 초등학교 학생들의 비율이 높은 것과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부모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40-49세의 아동학대행위자가 늘어났다. 30-40대 부모는 대부분 초등학교 자녀를 두고 있으며, 30-40대 부모와 초등학교 자녀사이에서 학대가 많이 발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1> 학대행위자의 성별, 연령 (단위: 건,%)

특성		발생건수		
		2004	2005	2006
성 별	남	62(53.9)	121(75.6)	131(70.4)
	여	51(44.3)	39(24.4)	55(29.6)
	미상	2(1.7)	0	0
	총계	115(100.0)	160(100)	186(100)
연 령	19세 이하	1(0.9)	0	0
	20-29세	10(8.7)	9(5.6)	23(12.4)
	30-39세	48(41.7)	49(30.6)	50(26.9)
	40-49세	34(29.6)	49(30.6)	69(37.1)
	50-59세	3(2.6)	37(23.1)	16(8.6)
	60-69세	2(1.7)	1(0.6)	4(2.2)
	70세이상	.	.	4(2.2)
	미표시	17(14.8)	15(9.4)	20(10.8)
계		115(100.0)	160(100)	186(100)

2) 학대자 직업유형

학대행위자 직업 유형을 분석한 결과, 무직이 46건(24.7%), 단순노무직이 33건(17.7%), 주부 13건(7.0%), 비정규직이 15건(8.1%), 기능직 11건(5.9%) 순이었다. 무직이나 주부들이 학대행위자로서 다소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경제적으로 힘들거나 가정에서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이 많을 때 학대의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자영업 8건(4.3%), 전문직 5건(2.7%), 서비스·판매직 3건(1.6%)이었다.

<표 3-2> 학대행위자 직업 유형 (단위 : 건,%)

직업유형	발생건수		
	2004	2005	2006
입법공무원·관리직	0	5(3.1)	0
전문직	6(5.2)	1(0.6)	5(2.7)
서비스·판매직	15(13.0)	2(1.3)	3(1.6)
농·어·축산업	3(2.6)	0	4(2.2)
기능직	9(7.8)	8(5.0)	11(5.9)
단순노무직	14(12.2)	41(25.8)	33(17.7)
자영업	10(8.7)	14(8.8)	8(4.3)
주 부	16(3.9)	17(10.7)	13(7.0)
비정규직	.	.	15(8.1)
무 직	18(15.7)	28(17.6)	46(24.7)
기타	7(6.1)	37(22.6)	26(14.0)
과약안됨	17(14.8)	7(4.4)	22(11.8)
계	115(100)	160(100)	186(100)

3) 학대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에서는 아동학대 전체사례 186건 중 부모가 153건으로 82.3%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친부모가 학대한 경우가 140건(75.2%)으로 높게 나타나 가정 내 학대의 심각성을 엿볼 수 있다. 이는 아동양육에 관한 부모교육과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필요성을 알 수 있다.

<표 3-3>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단위: 건,%)

관 계		발생건수		
		2004	2005	2006
부 모	친 부	53(46.1)	92(57.5)	107(57.5)
	친 모	34(29.6)	29(18.1)	33(17.7)
	계 부	2(1.7)	1(0.6)	2(1.1)
	계 모	10(8.7)	4(2.5)	11(5.9)
	양 부	0	0	0
	계	99(89.1)	126(78.8)	153(82.3)
	친조부모	.	.	8(4.3)
	외조부모	.	.	3(1.6)
	친인척	4(3.5)	0	6(3.2)
	형제·자매	0	0	0
	교 사	1(0.9)	2(1.3)	2(1.1)
	학원강사	2(1.7)	1(0.6)	2(1.1)
	이 웃	0	5(3.1)	4(2.2)
	시설종사자	0	24(15.0)	0
	부,모의 동거인	6(5.2)	0	5(2.7)
	기 타	3(2.6)	2(1.3)	3(1.6)
	계	16(13.9)	34(21.3)	33(17.7)
	총 계	115(100.0)	160(100)	186(100)

4) 학대자 특성

학대행위자 특성을 보면, 학대행위자 중 부적절한 양육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경우가 109건(21.8%), 자녀양육에 대한 지식 및 기술 부족이 103건(20.6%)으로 전체 학대행위자의 42.4%가 부모로서 자녀양육에 대한 지식이나 기술이 부족하며, 이로 인하여 아동 양육태도가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학대행위자들에게 많이 나타난 특성으로는 성격문제 56건(11.2%), 알콜 및 약물남용이 50건(10.0%), 경제적 어려움 45건(9.0%), 부부갈등 34건(6.8%), 스트레스 27건(5.4%), 배우자 폭력 25건(5.0%) 순이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분노조절이 되지 않고, 공격적이며 충동적인 성격에 술을 좋아하고 부부간에도 원만하지 않은 관계일 때 학대가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 학대행위자 특성

(단위: 건,%)

년도	성격적 문제	어린 학대 경험	알콜 약남용	신체 및 정신 질환/장애	원치 않는 아이	부적절한 양육 태도	자녀 양육 지 및 기술 부족	부부 갈등	사회적 고립	경제적 어려움	배우자 폭력 및 존속 학대	스트레스	과잉됨	기타	전체
2004	40 (12.7)	3 (1.0)	15 (4.8)	4 (1.3)	4 (1.3)	57 (18.2)	45 (14.3)	37 (11.8)	6 (1.9)	31 (9.9)	24 (7.6)	24 (7.6)	13 (4.1)	8 (2.5)	314 (100)
2005	48 (10.0)	5 (1.0)	67 (13.8)	11 (2.2)	5 (1.0)	95 (19.8)	87 (18.1)	41 (8.5)	5 (1.0)	42 (8.8)	22 (4.6)	32 (6.7)	4 (0.8)	16 (3.3)	480 (100)
2006	56 (11.2)	1 (0.2)	50 (10.0)	20 (1.2)	3 (0.6)	109 (21.8)	103 (20.6)	34 (6.8)	3 (0.6)	45 (9.0)	25 (5.0)	27 (5.4)	11 (2.2)	14 (2.8)	501 (100)

주: 중복표시

4. 아동학대 유형 및 발생장소

1) 아동학대 유형

아동학대 유형은 크게 단일학대와 중복학대로 나눌 수 있으며 아동학대로 판정된 총 186건 중 단일학대가 167건(89.8%)이고, 중복학대가 19건(10.2%)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일학대 중 방임 사례가 72건(38.7%)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고, 정서학대 45건(24.2%), 신체학대 42건(22.6%), 성학대 8건(4.3%) 순이었다.

<표 4-1> 아동학대 사례유형

(단위: 건,%)

학대유형		사례수		
		2004	2005	2006
단 일 학 대	신 체	21 (18.3)	36 (22.5)	42 (22.6)
	정 서	14 (12.2)	21 (13.1)	45 (24.2)
	방 임	43 (37.4)	38 (23.8)	72 (38.7)
	성학대	5 (4.3)	4 (2.5)	8 (4.3)
	유 기	0	0	0
	소계	83 (72.2)	99 (61.9)	167 (89.8)
중복학대		32 (27.8)	61 (38.1)	19 (10.2)
전 체		115 (100)	160 (100)	186 (100)

2) 신체학대

신체학대 사례 중는 '멍듦'이 25건(33.8%)과 '외상없음'이 25건(33.8%)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찢김' 10건(13.5%), '골절'은 2건(2.7%) 순이었다. '멍듦'과 '외상없음'이 높은 이유는 신고 시점이 학대가 발생한 직후에 이루어지지 않고, 시간이 흐른 뒤 복합적인 상황에 대한 내용을 신고한 것으로 알 수 있다.

<표 4-2> 신체학대 유형 (단위: 건,%)

	외상없음	멍듦	긁힘	꼬집힘	찢김	골절	찢림	목조름	던짐	화상	기타	전체
2004	22 (40.0)	21 (38.2)	5 (9.1)	0 (0.0)	1 (1.8)	0 (0.0)	0 (0.0)	0 (0.0)	0 (0.0)	0 (0.0)	5 (9.1)	55 (100)
2005	27 (26.2)	60 (58.3)	0 (0.0)	0 (0.0)	5 (4.9)	2 (1.9)	0 (0.0)	0 (0.0)	0 (0.0)	0 (0.0)	9 (8.7)	103 (100)
2006	25 (33.8)	25 (33.8)	0	0	10 (13.5)	2 (2.7)	0	0	0	0	12 (16.2)	74 (100)

3) 정서학대

정서학대 유형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내쫓거나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경우와 '공포분위기 조성이 각각 30건(28.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심한 욕설' 29건(27.6%), '소리지름' 21건(21.9%) 순으로 나타났다. 정서학대는 신체학대처럼 신체적인 외상이나 사망에까지 이르지 않는더라도 장기적으로 아동의 정서적 성장과 발달에 치명적인 해를 줄 수 있다.

<표 4-3> 정서학대 유형 (단위: 건,%)

내용	소리지름	심한 욕설	내쫓거나 죽이겠다고 위협·협박	공포분위기 조성	감금	기타	총계
2004	16 (21.1)	28 (36.8)	2 (2.6)	17 (22.4)	2 (2.6)	11 (14.5)	76 (100)
2005	21 (22.8)	30 (32.6)	32 (34.8)	32 (34.8)	2 (2.2)	3 (3.3)	92 (100)
2006	23 (21.9)	29 (27.6)	8 (7.6)	30 (28.6)	2 (1.9)	13 (12.4)	105 (100)

주 : 중복표시

4) 성학대

성인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일컫는 아동 성학대 유형은 성기삽입 1건, 성추행 8건만이 접수되었다. 광주 지역에 더 많은 아동 성학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성학대의 특성 상 드러나지 않은 사례가 많고, 성학대에 대한 접수는 해바라기 아동센터, 성폭력 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1366', 경찰서 등 다양한 기관에서 개입하고 있어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접수된 성학대 사례는 적은 편이다.

<표 4-4> 성학대 유형 (단위: 건,%)

	성추행	성기삽입	구강 성교 (oral sex)	매춘	포르노 그래피	성관계 노출	기타	전체
2004	2 (40.0)	3 (60.0)	0	0	0	0	0	5 (100)
2005	5 (71.4)	2 (28.6)	0	0	0	0	0	7 (100)
2006	8 (8.9)	1 (1.1)	0	0	0	0	0	9 (100)

주: 중복표시

5) 방임

아동들이 경험한 학대유형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한 유형은 방임 사례이다.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장시간 아동을 혼자 위험한 상태에 방치하는 등의 물리적 방임이 68건(66.0%), 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의 교육적 23건(22.3%), 의료적 처치를 해주지 않는 의료방임도 4건(3.9%), '가출한 아동을 찾지 않음' 3건(2.9%)으로 나타났고, 그 외에도 필요한 자녀를 양육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는 부모로서의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 방임 유형 (단위: 건,%)

내용	물리적 방임	교육적 방임	의료적 방임	가출아동 찾지 않음	기타	전체
2004	44 (65.7)	7 (10.4)	5 (7.5)	3 (4.5)	8 (11.9)	67 (100.0)
2005	45 (51.1)	6 (6.8)	3 (3.4)	4 (4.6)	30 (34.1)	88 (100)
2006	68 (65.4)	23 (22.1)	4 (3.8)	3 (2.9)	6 (5.8)	104 (100)

주: 중복표시

6) 유기

아동복지법에는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는 행위를 명백한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다. 광주지역에 접수된 유기 사례는 없었다. 이런 유기는 보호자에게 버림을 받는 스트레스로 인해 아동에게는 분노와 두려움, 대인관계에서의 신뢰감 상실 등과 같은 큰 상처를 남기게 된다.

7) 발생장소

아동학대 발생은 155건(87.0%)이 가정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아동에게 가장 안전한 환경이어야 할 가정이 아동에게 치명적인 손상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밖에 친척집 5건(2.8%), 길가(집근처) 6건(3.4%), 학원이 2건(1.1%) 등으로 나타났다.

<표 4-7> 아동학대 발생장소 (단위 : 건,%)

장소	발생수		
	2004	2005	2006
가정내	91(79.1)	117(73.1)	155(83.3)
친척집	5(4.3)	7(4.4)	5(2.7)
이웃집	2(1.7)	0(0.0)	4(2.2)
학원	3(2.6)	1(0.6)	2(1.1)
병원	2(1.7)	1(0.6)	0
길가(집근처)	4(3.5)	4(2.5)	6(3.2)
기 타	8(7.0)	30(18.5)	14(7.5)
전 체	115(100.0)	160(100)	186(100)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족 기능이 약한 가정을 대상으로 가족치료와 가족보존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5. 서비스제공현황

서비스 제공현황은 사례 개입된 186건에 대한 상담과 각종 서비스 제공을 말하는데, 피해아동, 학대자, 부모 및 가족, 기관을 포함한 기타로 분류한다.

기관에서 제공한 학대사례에 대한 총 서비스 건수는 7,067건이었다. 피해아동에 대한 서비스는 4,282건이었으며, 학대자에 대한 서비스는 815건, 부모 및 가족 상담은 1,255건, 기관을 포함한 기타 상담 건수는 715건이었다. 한 사례당 평균 33회 서비스를 실시하였다. 분류 대상에 따른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해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

피해아동에 대한 서비스제공 현황은 총 4,284건의 서비스가 주어졌다.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서비스 1189건(27.8%), 개별상담이 1053건(24.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놀이·미술·가족치료등 치료적 서비스 723건(16.96%), 가정지원서비스 431건(8.1%), 일시보호 347건(8.1%), 기관상담 302건(7.04%) 순으로 나타났다.

<표 5-1> 서비스 제공 (단위: 건,%)

구분	계	개별 상담	집단 상담	기관 상담	주변 조사	입원 치료	통원 치료	심리 검사	치료 서비스	교육 서비스	일시 보호	가정 지원	복지관 연결	국기초 연결	기타
2004	1,634 (100)	638 (39.0)	43 (2.6)	133 (8.1)	5 (0.3)	15 (0.9)	125 (7.6)	33 (2.0)	86 (5.3)	173 (10.6)	13 (0.8)	348 (21.3)	3 (0.2)	3 (0.2)	16 (1.0)
2005	1,700 (100)	678 (39.9)	34 (2.0)	97 (5.7)	21 (1.3)	1 (0.1)	55 (3.2)	22 (1.3)	441 (25.9)	2 (0.1)	15 (0.9)	303 (17.8)	0	0	31 (1.8)
2006	4,284 (100)	1053 (24.6)	6 (0.1)	302 (7.0)	26 (0.6)	66 (1.5)	1 (0.02)	54 (1.3)	723 (16.9)	1189 (27.8)	347 (8.1)	431 (10.1)	2 (0.04)	7 (0.2)	77 (1.8)

2) 학대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학대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현황은 총 815건의 서비스가 주어졌다.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을 살펴보면 개별상담이 567건(69.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대예방교육이 139건 (17.1%), 기관상담이 34건(4.2%), 가정지원이 16건(2.0%) 순으로 나타났다.

<표 5-2> 학대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단위: 건,%)

구분	계	개별 상담	집단 상담	기관 상담	주변 조사	입원 치료	통원 치료	심리 검사	치료 서비스	학대예방교육	가정 지원	복지관 연결	국기초 연결	기타
2004	659 (100)	618 (93.8)	0	13 (2.0)	0	3 (0.5)	1 (0.2)	1 (0.2)	0	9 (1.4)	10 (1.5)	0	2 (0.3)	2 (0.3)
2005	683 (100)	648 (94.9)	8 (1.2)	11 (1.6)	4 (0.6)	3 (0.4)	0	0	0	5 (0.7)	0	0	4 (0.6)	0
2006	815 (100)	567 (69.6)	7 (0.9)	34 (4.2)	12 (1.5)	1 (0.1)	0	1 (0.1)	0	139 (17.1)	16 (2.0)	0	1 (0.1)	37 (4.5)

3) 부모/가족에 대한 서비스

부모 및 가족에 대한 서비스 제공현황은 총 1,255건의 서비스가 주어졌다.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을 살펴보면 개별상담이 1,079건(85.7%)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표 5-3> 부모/가족에 대한 서비스 제공 (단위: 건,%)

구분	계	개별상 담	집단상 담	기관상 담	주변조 사	입원치 료	통원치 료	심리검 사	치료서 비스	학대에 방교육	가정지 원	복지관 연결	국기초 연결	기타
2004	810 (100)	787 (97.2)	1 (0.1)	9 (1.1)	2 (0.2)	0	0	2 (0.2)	0	3 (0.4)	2 (0.2)	2 (0.2)	2 (0.2)	0
2005	802 (100)	749 (93.4)	21 (2.6)	12 (1.5)	1 (0.1)	0	0	0	0	0	16 (2.0)	0	0	3 (0.4)
2006	1,255 (100)	1,079 (85.7)	3 (0.2)	21 (2.6)	14 (1.1)	0	0	9 (0.7)	0	25 (2.0)	89 (7.1)	0	1 (0.1)	14 (1.1)

4) 주변인에 대한 서비스

주변인 및 기타 상담 서비스 제공현황은 총 717건의 서비스가 주어졌다.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을 살펴보면 기관상담이 455건(63.5%), 개별상담 188건(26.2%) 순이었다.

<표 5-4> 주변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 (단위: 건,%)

구분	계	개별상 담	집단상 담	기관상 담	주변조 사	입원치 료	통원치 료	심리검 사	치료서 비스	학대에 방교육	가정지 원	복지관 연결	국기초 연결	기타
2004	795 (100)	334 (42.0)	0	405 (50.9)	10 (1.3)	0	0	0	0	1 (0.1)	0	6 (0.8)	21 (2.6)	18 (2.3)
2005	1,030 (100)	293 (28.4)	0	725 (70.4)	8 (0.8)	0	0	0	0	0	0	0	0	4 (0.4)
2006	717 (100)	188 (26.2)	5 (0.7)	455 (63.5)	18 (2.5)	0	0	3 (4.1)	0	0	30 (4.2)	0	6 (0.8)	12 (1.7)

6. 아동학대예방사업의 앞으로 추진 과제

1) 격리보호조치 강화 및 학대행위자의

상담교육 수강, 치료 의무화 방안 마련

사례신고 전화를 받고 현장조사를 나간 상담원이 해당 가정에서 피해 아동의 상태가 위험에 처해 있다고 판단하여 아동을 양육자로부터 격리하고자 하

여도 보호자가 거부할 경우 격리보호조치를 취하는데 많은 어려움과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비록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격리조치 및 아동일시보호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지만 아동이 일시 혹은 장기보호시설에서 보호중이라 하더라도 친권자인 부모가 친권을 주장하며 보호조치를 중단시키려 할때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법적으로 대항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러한 현실적인 제약은 격리보호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피해아동을 양육자로부터 격리시키지 못하는 사태를 초래하며 더 나아가 재 학대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아동복지법상에서 위기상황에 놓인 아동을 격리보호 조치 시킬 수 있는 법적 강제 조항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학대행위자의 70-80%가 부모로 드러났고, 학대 행위자의 특성분석결과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 '사회, 경제적 스트레스' '중독 및 질환문제'를 가장 많이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행위자들에게 상담수강 및 치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학대 행위자들은 대부분 자신의 학대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며, 상담, 교육 및 치료프로그램에 참여에 강한 저항감을 드러내는 비자발적 클라이언트들이다. 그러므로 학대행위자가 이러한 임상치료서비스를 거부하는 경우, 현재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행위자를 강제적으로 상담 및 치료에 참여시킬 수 있는 법적 의무조항이 법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즉 아동복지법 내에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교육 수강 및 치료의무화 방안을 마련하여 학대상황의 근본적인 변화를 꾀해야 할 것이다.

2)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인식 함양을 위한 의무교육제도 정착화

신고 의무자는 전문적 객관적 입장에서 아동학대를 파악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인 만큼 신고 의무자에 의한 신고율을 높이는 것은 중요하다. 일반 국민들의 인식향상을 꾀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 신고가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신고의무자에 대한 보다 제도적인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홍보와 교육이 수반되어야 한다.

3) 가정 내에서의 아동보호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 마련

학대받은 아동의 가족유형중 모자가정 11.8%, 부자가정이 31.7%, 재혼가정 8.1%로 인위적 가정해체를 경험한 아동이 절반을 넘고 있어 이혼 및 재혼가정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적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들 가정에 대한 제도적 지원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피해 아동의 조치시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무엇보다도 아동의 안전이며, 아동이 원 가정에서 보호될 수 없다면 아동에게 가장 안전한 장소로 분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아동학대예방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가정의 기능회복 및 강화라는 사실을 주지하여 최대한 아동을 가정으로부터 분리시키지 않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가정으로부터 분리되어 보호받고 있는 아동을 가족 통합프로그램을 통하여 원가정으로 복귀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아동이 영구적이고 안정된 가정을 가질 수 있도록 그룹홈, 가정위탁보호, 친인척보호, 입양등의 제도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

아동권 보장을 위한 지역사회 보호망에 관한 제언

소 동 하(전남아동보호전문기관장)

I. 들어가는 말

전남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업무를 하면서 지역사회보호망이 체계적이고 능동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피해아동과 가족 그리고 지원하는 기관과 실무자들이 더 나은 서비스를 원활하게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아동성학대대응강화능력사업을 진행하면서는 다른 유형의 학대아동들보다 다양하고 전문화된 지원 체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계되지 못해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결국에는 혼자 일하면서 힘들어 하는 것을 보고 어떠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면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토론에서는 2006.12 - 2007. 3. 22 전남지역 아동성학대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3차 기획포럼에서 논의된 것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II. 지역사회 보호망에 관한 제언

1. 기관중심의 서비스에서 아동중심의 서비스로 전환

가. 오라고 하지 말고 찾아가자 그리고 즉각적으로 대응하자

피해아동이 발생하면 가족과 아이들이 상담을 결정하고 전화를 할 때까지는 용기가 필요한데도 기관에서는 피해아동 및 가족에게 기관으로 방문해줄 것

을 요구한다. 그러나 피해아동과 가족들은 기관에서 찾아오길 바라며 즉각적으로 대응해줄길 원하고 있다.

나. one- stop service에서 one station service로 전환

기관들이 one- stop service를 표방하지만 현실은 그렇지않다. 피해아동과 가족들이 한 기관에 머물러 있으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one station service의 전환이 필요하다

2.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학대받은 아동의 신고를 공공기관에서 접수하여 공무원(Child Protective Service Worker)이 직접 현장조사하는 first line 업무와, 아동과 그 가족의 보호를 위한 서비스는 지역사회 내 상담, 치료, 위탁보호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second line 기관들의 서비스를 구매하여 계약에 의해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들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즉, 국가가 핫라인과 네트워크를 관리하고 있어 통합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3. 전문성 강화와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가. 기관 간 네트워크는 모델 제시가 아니라 경험 축적

기관 간 협력과 연계를 위한 회의 훈련과 더불어 기관들의 서비스정보교류, 자문-의뢰를 위한 업무체계를 진단 및 개선 필요가 있습니다.

나. 명망 있는 Supervisor를 통한 Supervision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테마기획사업 “아동성학대 대응능력강화사업”은 6개 기관이 실시하고 있는데 분야에서 전문적인 자문위원이 위촉되어 월1회 정기적으로 또는 사안별로 수시로 Supervision을 받고 테마기획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인정할 수 있는 명망 있는 Supervisor를 통해 Supervision을 지속적, 정기적으로 받자

다. 자원체계지도를 만들자

지역사회에 아동인권을 위해 활동하는 자원에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지도를 만들고 기관들이 할 수 있는 영역과 한계를 정하고 공유할 수 있는 지도를 만들어보자

라. 친해지자

전남지역 아동성학대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기획포럼을 3차에 걸쳐 실시하면서 토론자들과 예비모임을 가지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관련기관 실무자들의 접촉을 통해 친밀감형성을 강조 했습니다.

기관실무자들간의 관계형성을 위해서는 년1-2회 정도의 workshop을 1박2일 정도 실시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4. 보편적, 예방적 서비스로 전환

지역 내 아동 중 취약계층의 아동인권실태를 중심으로 주로 가정과 지역사회 내에서의 대응양식분석이 이번 토론회의 목적중 하나로 밝히고 있지만 UN아동의 권리 국제협약에는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칭함’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편적이고 예방적 서비스로의 전환을 위해 국가책임 하에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III. 마치면서

지역사회 내에서 아동의 인권에 관한 토론회가 개최된 것이 의미 있으며, 의미 있는 토론회가 지속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돕기 위한 작은 노력 하나하나가 모두 가치 있고 소중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모인 분들과 함께 지역사회가 어떻게 아동인권을 보호할 것인가 고민하고 튼튼한 망을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